

토론회: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

성 인지적 객관성은 가능한가?

2016 . 02 . 29 (월) 7pm

서울대학교 16동 2층
사회과학대학 학생 휴게실(라운지)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5513번 버스 승차 후
'법대입구' 정류장에서 하차)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은 왜 필요한가?
현재까지의 반성폭력 운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앞으로 반성폭력 운동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사회

연창기(서울대학교 학생 · 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발제

김민재(피해자중심주의의 대안을 만드는 모임 담쟁이)

토론

김보화/파이(한국 성폭력 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 책임 연구원)

전지운(변혁재장전 준비위원)

※ 개인 사정으로 패널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일정

7:00 - 7:10 개회 및 인사말

7:10 - 7:25 담쟁이 발제

7:25 - 8:00 토론문 발제

8:00 - 8:15 휴식

8:15 - 9:40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

문의:

김민재 010 3912 5995

전지운 010 8230 3097

함께 고민하고 싶은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피해자중심주의의 대안을 찾는 모임 **담쟁이**
변혁 재장전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 - 성인지적 객관성은 가능한가? 토론회 발제문과 토론문

차 례

[발제문] 성 인지적 객관성은 가능하다

- 피해자중심주의의 대안을 찾는 모임 담쟁이

----- 3쪽

[토론문1]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 : 성인지적 객관성은 가능한가” 토론문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김보화/파이

----- 31쪽

[토론문2]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길을 함께 찾아가자

- 전지윤(변혁재장전 준비위원) <http://rreload.tistory.com/>

----- 40쪽

[발제문]성 인지적 객관성은 가능하다

피해자중심주의의 대안을 찾는 모임 답쟁이

목차

1.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 현재까지의 반성폭력 운동의 원칙과 실천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 2.1 피해자중심주의는 무엇이라고 정의되고 있는가?
 - 2.1.1 사실관계 확정에서
 - 2.1.2 사건 성격 규정에서
 - 2.1.3 조치 도출에서
 - 2.1.4 소결
 - 2.2 피해자중심주의의 긍정적 의의
 - 2.2.1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 확정과 사건 성격 규정
 - 2.2.2 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와 배려
 - 2.3 피해자중심주의의 실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2.3.1 사실관계 확정에서의 가피해 선규정
 - 2.3.2 사건 성격의 비민주적 규정
 - 2.3.3 사건 해결 조치 도출에서의 비민주성
 - [보론] 2차 가해 개념의 확장과 그로 인한 토론의 위축
 - 2.4 소결: 총체적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3. 반성폭력 운동이 앞으로 견지해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 3.1 성 인지적 객관성은 무엇인가?
 - 3.2 성 인지적 객관성이 피해자중심주의로부터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점
 - 3.2.1 총론의 차원에서: 공동체적 해결 절차는 전 과정에서 성 인지적이어야 한다.
 - 3.2.2 성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사건 성격 규정에서
 - 3.2.3. 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와 배려의 측면에서
 - 3.3 성 인지적 객관성이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점
 - 3.3.1 객관성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진정한 객관성을 확립해나간다
 - 3.3.2 공동체적 해결의 최종적, 궁극적 목표는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보다는 공동체의 정의와 신뢰 회복이다
 - 3.3.3 소결: 해결 절차상의 차이점
 - 3.4 성 인지적 객관성에서 보완이 필요한 난점들

1.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 통념은 성폭력을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로, 심지어는 단순히 법적으로 고소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한다. 그러나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의 배경에 있는 사회 구조와 공동체 문화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짚어내 왔다.

성폭력 사건의 해결 주체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폭력 '사건'의 배후에 있는 잘못된 '성별 질서'를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오빠는 필요없다》의 저자 집회에서 연좌를 하다가 갑자기 새내기 여학우들을 앞으로 불러 노래를 시킨 사회자의 일화를 통해 '여성을 집단적으로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일련의 문화적 과정'이 남성들 사이에 일반화되어 있다고 지적한다.¹⁾ 그녀는 남성들이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격하시키고, 이 대상을 정복/소비/향유함으로써 자신을 남성 집단의 일원으로 정체화하고 그 집단의 다른 성원들과 유대를 맺는다고 주장한다. 아들이나 후배가 아버지나 선배의 권장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나, 남학생들이 포르노 영상을 나누어 보며 모종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문화에 익숙해진 남성들은 여성들을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노리개나 소비할 대상으로, 인간으로 보이더라도 자기보다 열등한 인간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성폭력 사건의 배후에는 이와 같은 성차별적, 성폭력적 문화나 태도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저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진정 피해자의 훼손된 삶과 존엄을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평소에 공동체에서 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 왔는지, 그것이 성적 권력관계에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대안적인 태도를 모색하는 집단적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피해자의 치유나 생존은 단순히 상담프로그램을 주선하거나 휴가를 준다고 해서 담보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공동체의 이해와 지지, 배려가 그 이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근래에 피해자들의 PTSD 증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주위의 반응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²⁾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당하고도 혼자 속앓이해야 하거나, 공동체에 의해 또다시 상처받고 내몰리지 않으려면 공동체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지지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공동체 성원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성폭력을 무마하려는 유혹이 왜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고(이런 유혹은 교과서로 배울 때는 당연히 비상식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현실에서 부딪히면 너무나 가깝다) 그만큼 경계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며, 여성에 대한 순결 이데올로기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비난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성폭력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과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보다 우선 존중하는 자세로 들을 필요가 있다.(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피해자를 의심하고 보는 사고방식을 경계하면서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면 '별 것 아닌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망신시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성폭력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자주 그렇듯 피해자가 가해자의 권력 때문에 부당하게 억압받게 될 경우 피해자에게 연대하고 힘을 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뒤에서 사건을 가십거리로 삼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도움을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체 전체가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 이 모든 것이 저절로 갖추어지기를 기대

1) 전희경, 《오빠는 필요없다》, 이매진, 2008, pp. 157-158.

2) 일다, <성폭력 행위보다 '통념'이 더 큰 피해 남겨>, 2015. 5. 1.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7074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설령 공동체의 문화에서 딱히 잘못된 점을 찾아낼 수 없거나 피해자가 공동체의 밖에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적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폭력은 피해자의 권익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의 정의와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³⁾ 공동체는 ‘이 공동체는 (그런 대로라도) 안전하고 정의롭다’는 암묵적인 신뢰 위에서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신뢰가 깨졌을 때 구성원들은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거나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데, 성폭력 사건은 발생 자체로 이러한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한다. 어떤 의미에서, 성폭력 사건에서 상처입는 것은 피해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다. 이 상처를 낮게 하려면 훼손된 정의와 신뢰를 복원할 수 있는 집단적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는 단순히 기계적이거나 요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참여하면서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금 구축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2. 현재까지의 반성폭력 운동의 원칙과 실천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대한 옹호와 비판의 문제 이전에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반성폭력 운동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대중은, 누군가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소명의 기회 없이 곧바로 피해호소인의 뜻대로 각종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 피해자중심주의라고 냉소하고, 반성폭력 활동가들은 피해자중심주의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반론한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몇 가지 구절들로 표현되는 피해자중심주의의 ‘정의(definition)’와, 피해자중심주의가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다소 다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피해자중심주의가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정의되는지 살펴보고, 왜 그러한 원칙이 도입되었고 어떤 긍정적 기여를 했는지를 검토한 후, 현재 피해자중심주의의 실천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알아볼 것이다.

2.1. 피해자중심주의는 무엇이라고 정의되고 있는가?

피해자중심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훈창, <공동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한 발 더 나아가 위한 발걸음-10기 반성폭력위원회 하반기 반성폭력 교훈을 진행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2014.2.15. <http://blog.iinbo.net/mayday/543>

피해자중심주의는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경험, 기억, 감정등을 존중하여 이를 적극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재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사회에서는 남성중심주의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객관성’이란 이름으로 피해자의 경험과 사건에 대한 해석을 제한하는 현실을 넘기 위해 피해자중심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폭력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3) 전희경, <공동체 성폭력 '이후',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다>,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토론회 발제문, 한국여성민우회, 2012. 10. 10.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현장활동 반성폭력 자료집> (전국학생행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라온 파일)

http://stulink.jinbo.net/bbs/board.php?bo_table=B41&wr_id=528&sca=%ED%8E%98%EB%AF%B8%EB%8B%88%EC%A6%98&page=2

따라서 성폭력은 행위가 아닌 맥락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성폭력 사건을 다시 구성하고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여성의 경험과 감정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피해자중심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성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법률적 문구나 조항만으로는 규정이나 예방 및 처벌될 수 없는 여성-피해의 영역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다른 경험을 하며 그 경험에 근거하여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데, 서로 다른 시각이 공존할 때, 피해자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존중해서 '피해자 주관의 인식'을 기초로 성폭력 사건 발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입니다.

앞에서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이 필요한 이유에서 논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구조적으로 차별 받고 있다. 특히 섹슈얼리티 영역에서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중잣대가 사회통념이나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은 각종 부당한 의심과 공격에 시달리게 되고, 엄연히 성폭력인데도 사법기관에서는 처벌되지 않거나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중심주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서, '성폭력 사건에서 중립을 취할 것이 아니라 피해호소인의 편에 서는 것이 옳다'는 명제를 내놓은 것이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중심주의는 한국 운동사회의 현실에 대한 하나의 답이기도 하다. 피해자중심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누가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2000년 12월에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 사례와 가해자 실명을 발표한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이하 '100인위')에서 제시한 원칙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한다.⁴⁾ 성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한국의 운동사회는 안타깝게도 일반 사회보다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호소인의 인권을 도외시키고 왜곡된 조직보위론을 내세우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에서 주체로 서고자 했던 여성 활동가들은 반성폭력 운동에 나서며 기존 운동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는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맑스주의 등을 철학적으로 비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는데, 그런 비판은 여성운동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0년대 여성운동에는, 우리 사회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전체 변혁운동과 공유하며 여성 전체가 아닌 노동자민중 여성들을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맑스주의 등의 이념이 퇴조하면서, 여성 전체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며 남성도 가해자임을 강조하고 기존에 간과되었던 문화적 영역의 폭력과 차별에 주목하는 여성주의 운동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의미의 피해자중심주의를 외국의 페미니즘 운동에서 찾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논하고 있는 피해자중심주의는 그저 성폭력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 아니라 여성주의 운동이 한국 사회운동 전반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어떤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크게 사실관계 확정, 사건 성격 규정, 조치 도출로 나눌 수 있다면, 피해자중심주의가 각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이러한 내규 제정 흐름은 운동사회가 100인위 운동을 이해하고, 성폭력 의제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가장 일차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100인위가 급진적 반성폭력운동의 원리에 입각해 제시했던 성폭력 개념,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 규정, 가해자 실명 공개의 원칙 등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운동사회가 내규를 통해 흡수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엄혜진, <운동사회 성폭력 의제화의 의의와 쟁점>, 페미니즘연구 제9권 1호(2009)

또한 100인위 보도자료/입장 게시판에 실린, 민주노총 입장에 대한 논평 글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wom100-3&id=7&page=2>)에서 '피해자중심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다.

2.1.1 사실관계 확정에서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어서 피해자중심주의는, 비록 피해호소인 진술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는 정의할 수 있다.

개정 이전 서울대 사회대 반성폭력 학생회칙

제2조(성폭력의 개념) 제1항에 대한 해설

이 학생회칙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피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성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치유하기 위해 공동체가 노력해야 함을 뜻한다. 이것은 적절한 증거와 조사에 의해 판단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합의한 사실로서 성폭력에 대한 태도 문제이다.

통합진보당 이○○/충남대련 김○○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개입장문에서 발췌

[민주노총 충남본부 | 진농 충남도연맹 | 진보신당 충남도당 | 천안여성회 | 충남성폭력상담소 | 충남노동인권센터 | 충남노동진선 | 충남 사노위 | 통합진보당 이○○ 성폭력사건 피해자 및 대리인 재현 | 충남대련 김○○ 성폭력사건 피해자 및 대리인 이연재]

첫째, 통합진보당 이○○/충남대련 김○○ 성폭력사건은 철저히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을 가지고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중략)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흐리거나 왜곡시키는 모든 말들을 방어하고 가해자가 한 행동을 피해자의 경험과 감정,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의 본질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은 늘 상반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는 가해자의 의도나 진술보다 피해자의 경험과 감정,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는 폭력적 상황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명백한 확인이 있기전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진실로 간주되어야 한다. (후략)

2.1.2 사건 성격 규정에서

앞에서 개정 이전 서울대 사회대 반성폭력 학생회칙 제2조에서는 “피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성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건 성격 규정에 있어서, 자신의 피해를 성폭력으로 규정하여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책위가 그 규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의미한다. 전국학생행진도 유사한 논지로 피해자중심주의를 정의하고 있다.

전국학생행진 <반성폭력 운동, 그 일진전을 위하여> (전국학생행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라온 글)

피해자 중심주의의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개념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개념 규정한다는 것은 사건의 해석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를 때 피해자의 해석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개정 이전 서울대 사회대 반성폭력 학생회칙은 오직 피해자만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권한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제8조(대책위원회) 제3항(대책위원회의 역할) 제1호 “성폭력 사건의 정황 사실에 대한 조사”

③항 1호에 관하여: (중략) 그러나 대책위의 역할은 ‘조사’로 한정지어져야 하며 사건을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실제로 사건이 성폭력이라고 판단하는 주체는 피해자 자신이며 피해자 이외에 대책위 및 제3자가 성폭력여부를 결

정지어서는 안 된다.

2.1.3 조치 도출에서

위와 같이 피해호소인의 해석을 우선 신뢰하고 피해호소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규정하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사건에 대한 조치를 도출할 때에도 적용된다. 이는 피해자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되새기고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정 이전 서울대 사회대 반성폭력 학생회칙에 따르면 2차 가해는 “사건 신고 이후 가해자 또는 그 주변인이 피해자 및 신고자와 접촉하여 신고를 취소하거나 사건을 공식적으로 해결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것,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 피해자 및 신고자를 협박하는 것, 피해자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 사건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 등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재차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

2010년 서울대 인문대 새내기 새로배움터 반성폭력 내부규약

서울대 대학원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http://blog.naver.com/snusurvive11/20166054159>

이러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폭력 사건은 해결되며 사건의 해결과정 역시 이에 준하여 대책위 등을 구성하여 해결한다. 그리고 대책위의 구성 및 이를 통한 처벌 역시 일차적으로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정 이전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칙

제9조(사건해결의 방법)에 대한 해설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옳다. (중략) 사후처리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결코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또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요구안을 주장할 수 있으며, 대책 위원회는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사후처리를 결정한다.

2.1.4 소결

위와 같은 여러 정의를 종합해 볼 때, 반성폭력 운동에서 다수가 합의하는 피해자중심주의의 정의는

- (1)사실관계 확정의 측면에서, 가해지목인의 진술과 피해호소인의 진술이 충돌할 때 피해호소인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신뢰한다.
- (2)사건 성격 규정의 측면에서, 해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예컨대 모든 대책위원들)이 피해호소인/피해자의 관점에 서서 사건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한다. 여기서 관점이란 피해호소인이 느꼈다고 호소하는 주관적 감정도 포함한다.
- (3)조치 도출의 측면에서 다른 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보다는 피해호소인/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⁵⁾ 또한, 현 사회에서 객관적이라고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성차별에 대한 비판과, 객관적인 판단의 가능성 자체에 대한 부정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의만 놓고 보면 다수의 대중은 이것이 ‘피해자제멋대로주의’이며 피해자 권력화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반성폭력 활동가들은 그것이 오히려라고 반론한다. 피해자 권력화 현상에 대한 제기는 “실제로는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피해자 마음대로 다 된다’는 식의 권력화 착시”⁶⁾이며 “반여성주의적 반격”⁷⁾이라는 것이다. 또한 “설령 피해자의 호소가 있더라도, 그리고 피해자중심주의가 도입되었더라도 피해자와는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분명 있어왔고, 지금도 그렇”⁸⁾다고 한다.

이러한 반론의 타당성 여부는 2.3에서 검토할 것이지만, 피해자중심주의가 도입된 취지와 맥락, 나름의 긍정적 의의를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정의만 보고 피해자중심주의가 ‘피해자제멋대로주의’이며 아무런 합리성도 없다고 조롱하는 것은 성급한 태도일 수 있다. 2.2에서는 피해자중심주의의 긍정적 의의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2.2 피해자중심주의의 긍정적 의의⁹⁾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반성폭력 운동은 ‘비합리적’이거나 ‘피해망상적’인 사람으로 치부되어 침묵해야 했던 수많은 성폭력 피해호소인들, 피해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발화하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그 이전에 성폭력 사건을 보는 사회 일반의 관점은 ‘가해자중심주의’나 마찬가지였고 운동사회도 이 점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때 피해자중심주의가 반성폭력 활동가들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중심주의와 맞설 때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무기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중심주의의 긍정적 의의는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 확정과 사건 성격 규정이라는 측면과, 피해호소인/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배려의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2.2.1.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 확정과 사건 성격 규정

여기서 피해자중심주의의 가장 큰 기여는, 가해자의 의도를 이유로 성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피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라는 항변은 징계의 수위를 정할 때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지 언정 그를 무죄로 만들어 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돌을 던져서 유리창이 깨졌다면 돌을 던진 사람에게 창문을 깬 의도가 있었든 없었던 그것은 기물 파손이며, 의도는 그 이후에 고려할 문제이다. 하지만 기존의 가해자중심주의 하에서 가해자들은 여성과 남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잣대 등 성차별적 사회통념을 등에 업고 자신은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의도(‘그저 농담일 뿐이다’)를 가진 사람임을 강조했고, 그러면 피해호

5) 물론 예외도 있다. 공헌 활동가는 <성폭력, 피해자중심주의, 2차 가해>(http://gonghyun.tistory.com/1144)에서 사실 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 우선 신뢰를 규정하지 않거나 사건 성격 규정에서도 피해자의 해석과 맥락을 들은 후 그것이 객관적인 성폭력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하는 등 이와 다소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다른 글에서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외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다.

6) 전희경, <발제 I: 공동체 성폭력 ‘이후’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다>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 토론회

7) 전희경, 같은 글

8) 김푸른솔, <피해자중심주의를 옹호하며>

9) 류한수진, <성인지, 성평등의 공동체를 향하여 -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대하고 해결해나갈 것인가> 8월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현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주최 半공개토론회 발제문 중 “피해자중심주의의 의의” 부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소폭 수정한 것입니다.

소인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과민한 사람(‘그저 농담을 했을 뿐인데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낸다’)으로 매도당할 뿐 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는 고려되지도 않았다. 피해자중심주의는 이것이 부당한 것임을, 가해자의 의도가 사실관계 확정과 사건 성격 규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두 번째로,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이 단순한 일탈적 범죄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성차별에 근본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적 문제, 공동체 문화의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 사이의 개인적 문제로 남겨 두지 말고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올바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호소인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고 사건 성격을 규정하고 가해지목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혼자 감내하는 대신, 사건 해결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가해자중심주의 하에서 피해호소인에게 입증책임 등 모든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은 분명 부당한 것이었다.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대리인 제도, 피해자 지지모임의 결성, 대책위원회 등 공동체적, 공식적 해결 절차들이 고안됨으로써 공동체도 내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질 방법이 마련되었다.

2.2.2 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와 배려

첫 번째로, 피해자중심주의는 성폭력 피해가 한 인간에게 주는 고통이 단순히 물리적, 외상적 상처가 아님을 밝히고 이제까지 발화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을 언어화해냈다.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분노, 우울, 무기력, 회피 등은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며,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러한 증상들을 피해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정신질환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의 일부로서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는 피해호소인이 대리인을 두어 절차나 소통을 대신하게 할 권리, 가해자나 아는 사람 등 피해자가 마주보기 곤란한 사람을 절차에서 제척할 권리, 가해자로부터 재차 폭력이나 위협을 당하거나 트라우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간적으로 분리될 권리, 심리적 치유를 위해 지원받을 권리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두 번째로, 피해자중심주의는 가해자중심주의 사회에서 피해호소인들,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다는 이유로 혹은 당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낙인에 재차 노출되기 쉬운 현실을 고발하였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호소인을 불리하게 만드는 기울어진 권력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에 대한 책임전가를 당하거나(피해자유발론), 사생활 및 성생활에 대한 음해, 과민하다는 비난 등 2차 가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2차 가해’의 정의는 현재보다 더 엄밀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지만, 아무튼 ‘2차 가해’를 성폭력에 준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제재하게 된 것은 피해자중심주의의 긍정적 의미이다. 또한 사건을 공론화할 경우에도 신상이 밝혀지지 않고 익명으로 남을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사건이 선정적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의 유출은 공동체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는 점이 합의된 것 역시 피해자중심주의의 기여이다.

2.3 피해자중심주의의 실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견 과도하게 보이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이 도입된 데는 나름의 맥락과 근거가 있었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성차별적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데 피해자중심주의가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중은 피해자중심주의의 그러한 취지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피해자중심주의가 피해자 제멋대로주의라고 냉소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중심주의가 실천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은 대중

의 태도가 100% 오히려 왜곡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2.3.1 사실관계 확정에서의 가피해 선규정

피해자중심주의는 누군가가 피해를 호소하며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했을 때, 피해호소인의 진술과 가해지목인의 진술을 함께 듣고 진술의 타당성, 신뢰성을 따지는 진상조사 과정 없이 가해-피해 구도를 선규정하는 방식으로 실천된 바 있다. 진상조사 과정이 있었다더라도 사실상 조사 주체들이, 피해호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결론을 묵시적으로 미리 정해 놓고 요식행위처럼 조사를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피해자중심주의의 원칙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100인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하여 공개한 방식이다. 100인 위원회는 가해자의 진술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듣고 사건 개요와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심지어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않고 언론에 나왔던 사건을 재차 정리하여 공개하기도 하여 논란이 되었다.¹⁰⁾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wom100-3&id=3&page=2>

“2. 가해자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 반론권을 원칙적으로 봉쇄하였다던가 절대 반론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 사실을 공개할 때 가해자의 반론을 수렴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가해사실은 성립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성폭력을 바라봄에 있어서 어디까지 성폭력인가 하는 문제는 그것이 피해자 중심에서 사고되었을 때만이 명확히 판단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해자도 충분히 열려진 공간에서 해명이나 반론을 할 수 있으며 이미 가해자 2인이 사과문을 참세상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wom100-3&id=6&page=2>

“(2) 성폭력 사건의 조사과정 및 사건규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경험이다. / (중략) 또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설명만으로도 성폭력은 규정될 수 있다. 이는 성폭력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경험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피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건의 조사와 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정** 사건에 대한 입장서에서 100인위는 다음과 같이, 양쪽의 진술을 모두 듣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허구적 객관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차공개 이후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이루어진 논의는, 성폭력에 대한 운동 사회의 인식 수준과 전형적 대응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의문시하면서 구체적인 정황을 재기술하도록 요구하거나 성폭력이 아니라 성관계 또는 '치정사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을 똑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식의 허구적 객관성을 내세워 피해사실을 부정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다.

오늘날에도 피해자중심주의가 사실관계 확정에서 피해호소인의 말만 들어야 할 것 같은 암묵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2012.10.10.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 토론회 자료집 中 성화(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우리는 공유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피해자중심주의가 피해자의 뜻대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는 순간 진상조사위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그 사건은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되고, 처리된다." (105쪽)

10) 엄혜진, 위의 글

2004 민우회 좌담회 <http://mildaro.com/a.html?uid=1713>

[여성주의 저널 일다] '피해자 중심주의' 새롭게 고민하자

몇 년 전 A대학의 총여학생회는 술자리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신고 받고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가해자는 끝까지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늦은 밤 술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만큼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했다. 성폭력 대책위원회 측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대책위 활동은 '사실 입증'에 지난한 과정을 거쳤고 그 해결이 쉽지 않았다. 당시 대책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활동가는 "피해자가 자신의 당시 상황과 맥락을 잘 전달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마치 2차 가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폭력 상황을 맥락화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과 피해를 의심하는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한다.

2.3.2 사건 성격의 비민주적 규정

피해자중심주의는 사건의 성격이 전적으로 피해호소인의 뜻에 따라 규정되고 그에 대한 이견이 반영되지 않는 행위 혹은 2차 가해로 매도되는 방식으로 실천된 바 있다. 이는 성폭력 개념의 과도한 확장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성격 규정 방식은 공동체적 해결과도 양립하기 어렵다. 공동체적 해결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며 주체화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성폭력 개념 규정에 대한 평가는 결국 성폭력의 정의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의 쟁점과도 관련이 있다. 피해자중심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젠더 폭력으로서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하고, 연속선으로서의 성폭력 개념¹¹⁾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섹슈얼리티와 관련이 없는 젠더 폭력도 성폭력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농활 등에 가서 여학생은 요리를 하고 남학생은 무거운 짐을 드는 것과 같은 성별 분업도 성폭력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1996년 이화여대 대동제에 고려대 남학생들이 와서 이화광장을 점거, 기물을 파손하고 기차놀이 대형으로 뛰어다니며 이화여대 학생들을 넘어뜨린 행위를 다음과 같은 논거로 성폭력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 사건에 대한 규정을 둘러싸고 성폭력 개념 논쟁이 불붙었고 성폭력 개념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사건이 '성폭력'인가? 고대생들의 행동은 종래 우리가 성폭력의 성립 요건이라고 생각했던 성적인 행동은 아니다.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하여 음담패설 등 언어폭력을 성폭력으로 본다 해도 우르르 몰려다니고 기차놀이를 한 것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화여대 학생들에 의하면 (중략) 고대생들의 이대에서의 난동은 그 장소가 여성들만의 공간이고 그 여성이 남성(고대)보다 물리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중략) 즉 성적(sexual)인 의미에서의 구체적인 폭력행위가 없고 피해자들이 느낀 모욕과 분노가 '여성으로서의 모욕'이지 '성적 모욕'이라고 보기 힘든 이 사건이, 상징적인 차원에서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어떤 행위가 실제로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은유로서 성폭력일 수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민경자, <성폭력 추방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88~89쪽)

하지만 이런 행위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굳이 "상징적인 차원"이나 "은유"를 동원하며 성폭력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굳이 성폭력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 혹은 젠더 폭력이라고 부르더라도 고대생들의 행동은 충분히 문제적인 것이 되고, 또한 농활에서의 성별 분업도 성차별이라

11)전희경, 발제문 <공동체 성폭력 '이후'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2012년 토론회 《성폭력을 직면하고 다시 사는 법》자료집 中 "여성주의는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gender violence)으로 설명해 왔으며, 이러한 설명 속에서 '문제적 성'과 '정상적 성', 강간과 섹스 사이에는 분명하고 질적인 구분선이 없다. 이는 성폭력의 연속선(continuum) 개념을 통해 설명되어 왔다(Bart ; Kelly)."

고 불려서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반대하여 어떤 권리를 획득할 것인가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권리의 침해를 말하는 것이며, 성폭력도 폭력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폭력을 여성의 정체성 혹은 공간 혹은 권리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남성이나 성 소수자도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로 세움으로써 섹슈얼리티 문화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데 더 유리하다. 또한 “여성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 억압, 무시, 배제, 타자화, 대상화, 괴롭힘, 폭력이 ‘광의의 성폭력’으로 간주되면서 (“성폭력 개념 확장”), 남성권력을 문제화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들이 개발되지 못하고, 문제제기하려면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피해자만 문제제기할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고”¹²⁾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므로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정의되어야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것을 접하거나 접하지 않을 권리,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불필요한 간섭이나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등 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로 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반성폭력 운동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닌 행위 혹은 폭력이 아닌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실천된 바 있다.

(1) 2000년 100인위가 폭로한 정** 사건

먼저 100인위가 폭로한 사건들 중 하나인 정** 총학생회장 사건은 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까지 피해자중심주의에 의해 성폭력으로 규정된 사례이다. 이 사건은 100인위 홈페이지¹³⁾에 가해자 명단이 실명으로 공개된 사례이지만,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명이 언급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호명되는 것은 피해 호소인과 가해지목인 모두에게 불편할 수 있고, 개별 사건이 제3자에 의해서 평가되고 논의되는 것 자체가 문제제기할 여지가 있다는 제기가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발제문에 적지 않는다.

(2) 2003년 모 노동운동조직 김** 언어 ‘성폭력’ 사건

이 사건은 가해자가 성차별적 언어폭력으로 규정될 수 있는 욕설을 여학생 동지에게 하였는데, 피해 여학생과 대책위원회는 그것이 언어 성폭력이라고 주장하였고 가해자는 언어폭력일 뿐 성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립하였던 사례이다.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성폭력이 아닌 행위까지 성폭력으로 규정된 사례인 것이다. 이 사건은 가해자의 실명까지 포함해 공론화되었고 백서¹⁴⁾도 발간된 사례이지만,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실명이 언급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호명되는 것은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 모두에게 불편할 수 있고, 성폭력 사건에는 백서가 있다 해도 종이로만은 판단할 수 없는 다른 맥락도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이 제3자에 의해서 평가되고 논의되는 것 자체가 문제제기할 여지가 있다는 제기가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발제문에 적지 않는다.

(3) 2012년 공개된 서울대 “성폭력 대책위” 사건¹⁵⁾

2012년 10월에 공개된 서울대 “성폭력 대책위” 사건(이하 ‘대책위 사건’)에서도 피해자중심주의는 사건 성격의 비민주적 규정을 정당화하였다. 남성 B는 여성 A에게 이별통보를 하면서 흡연을 하였고 A는 이를 B의 소속 조직인 S 관악분회에 성폭력으로 제기하는 요청서를 써서 S 관악분회 회원이자 당시 제30대 사

12) 전희경, 같은 글

13)

<http://go.jinbo.net/commune/list.php?board=wom100-1&SESSIONID=50819ad1edd945b3874839883531e738>

14)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17110&page=1&s2=subject&s_arg=김**

15) 진상조사보고서가 docs.google.com/file/d/0By-u0sDG7zBRThsSzhxcU1makU/edit에 있다.

회대 학생회장이었던 류한**¹⁶⁾ 활동가에게 가져갔다. 자신이 겪은 일이 성폭력이므로 B를 성폭력 가해자로 처리하고 이 사건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다루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류한** 활동가는 그것을 보고 자기가 보기에는 성폭력이 아닌 것 같으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요지로 설득하며 요청서 접수를 반려¹⁷⁾하였고 대신 개인적으로 사과할 것을 B에게 권고하였다. 시간이 흐른 후 S는 이 사건을 다른 경로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내부에서 논의를 하여, B의 행위를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A에게 답을 하였다.

그러자 A는 가해자가 속해 있는 집단끼리 이 사건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토론해서 명석판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피해자중심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2차 가해라는 내용의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A는 자신이 처음에 요청서를 들고 갔을 때 접수를 반려한 류한**의 행위에 대해서도 2차 가해라고 제소하였다.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S는 진술 수합 등을 통해 경과를 조사하고 사건의 성격을 규명한 후 해결 절차로 이행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A의 소속 조직 서울대 H와 관악 여성주의 자치모임 G는 이에 반대하며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B 및 2차 가해자로 제소된 이들에 대한 테이블을 각각 구성해 사과문을 작성하고 검토하지는 안을 내놓았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각 테이블에서 1차 및 2차 가해자로 제소된 이들이 가해를 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고, 그들이 사과문을 제출하고 A가 침묵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대책위원회가 운영된 과정은 2.3.1의 ‘가피해 선규정’ 역시도 잘 보여준다.

이렇게 A와 H와 G는 지속적으로 가해자 및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사건이 성폭력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없으며, 피해자중심주의에 따라 오직 피해자만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개정 이전 사회대 학생회칙의 제8조 제3항 해설 “그러나 대책위의 역할은 ‘조사’로 한정지어져야 하며 사건을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실제로 사건이 성폭력이라고 판단하는 주체는 피해자 자신이며 피해자 이외에 대책위 및 제3자가 성폭력여부를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를 문자 그대로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폭력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행위가 성폭력으로 규정된 것¹⁸⁾이었다.

16) 이 요청서는 S에 제기된 것이고 류한** 활동가는 사회대 학생회장으로서가 아니라 S 회원으로서 접수를 반려한 것이다. 다만 2012년 10월 류한** 활동가의 사회대 학생회장직 사퇴를 계기로 대책위 사건이 대중공개되었다.

17) 그 자리에서는 A도 설득되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돌아갔다.

18) 원사건이 왜 성폭력도 아니고 젠더폭력도 아니며 일반적인 폭력도 아닌지에 대해서는 2013.5.9. 서울대 “성폭력 대책위” 사건 공개토론회 발제문 중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발제문의 해당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이별 통보 당시 B의 흡연 행위는 젠더 폭력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의미의 폭력이라고도 볼 수 없다. (중략) 젠더 권력 관계는 구조적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공격과 방어는 원칙적으로 그 권력 관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남성 A가 여성 B와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도 사과하지 않아서 B가 정신적 불쾌감을 겪은 경우 “만약 A와 B의 성별이 반대였다면 A의 행동이 달랐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무 고민 없이 부정으로 답할 수는 없다. 젠더 권력 관계로 인해 남성인 A가 관계에서 우위에 서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례를 비롯하여 남성과 여성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남성이 행하는 모든 종류의 ‘공격’을 젠더 폭력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모든 개념들이 그렇듯이, 젠더 폭력은 젠더 폭력이 아닌 것이 존재함으로써 성립하기 때문이다. 남성이 여성과의 상호작용에서 행하는 어떤 공격이 젠더 폭력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어떤 공격이 폭력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상대방의 존엄성 및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해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한 어떤 폭력이 젠더 폭력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젠더 권력 관계가 그 공격이 성립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H에서 든 사례였던 아내폭력의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젠더 권력 관계에서 기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폭력이 사적인 것, ‘집안 문제’로 정당화되는 이유, 아내가 그 폭력에 잘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 등이 젠더 권력 관계를 본질로 한다. 그렇기에 이것은 젠더 권력 관계를 핵심으로 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대 남학생들이 이화여대 측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을 전통으로 여겨 온 것 역시, 먼저 자신들만의 공간을 존중받고 기물 파손, 소란 등에 의해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여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폭력이다. 그리고 남학생들이 젠더 권력 관계로 인해 여학생들보다 우위에 설 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에 의해 표출되는 공격성이 남성의 공격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미화되고 정당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젠더 권력 관계를 성립의 핵심 조건으로 하는 젠더 폭력이다.

반면 남성 갑이 여성 을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도 사과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 단순히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을 넘어서 합당한 사과를 하지 않았으므로 을의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젠더 폭력은 아니다. 물론 갑이 여성이고 을이 남성이었다면 둘의 관계에서 갑이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러면 위와 같

참고로 A는 1차 테이블 추가 요구사항을 제출할 때 연애 중 (상호 합의한) 스킨십을 한 것도 섹슈얼리티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라고 제기하였다. A는 상호 간의 감정이 깊은 줄 알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B는 단기간이 지난 후 이별통보를 하였고 이는 A가 스킨십에 합의해 줄 때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깊은 감정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섹슈얼리티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라는 것이었다. 이 역시 성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¹⁹⁾

은 무례함을 쉽게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례에도 분명 젠더 권력 관계는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둘 사이의 관계에서 남성인 갑이 우위를 차지한 것에는 젠더 권력 관계가 부분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우위를 바탕으로 갑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도 사과하지 않은 행위의 원인은 갑의 무례함/배려 부족/부도덕이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공격이 성립되는 핵심 조건은 젠더 권력 관계라기보다는 개인의 무례함/배려 부족/부도덕인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의 판단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A와 B 역시 한국 사회의 젠더 권력 구조 내부에 있기에 양자의 관계가 그 권력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앞서서 확인했듯이, 그것만으로는 그 관계에서 B가 A에게 행한 모든 공격을 젠더 폭력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 공격이 폭력인지를 살펴보고 그 폭력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젠더 권력 관계가 핵심적, 본질적 조건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흡연이라는 전략적 공격 및 자신의 발언권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상대의 존중받을 권리 및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폭력이 아니다.

원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상황에서 흡연이라는 B의 행위는 A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B가 정말로 공격의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격은 권리 침해가 아니기에 폭력이 아니며, 공격으로 처벌받거나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논리 이외의 요소로 상대를 압도하고 자신의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전략들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자본가가 노동자와 협상할 때 자신의 권력 및 자본을 과시하는 비언어적 기호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발언권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 운동가들이 그러한 기호들의 사용 자체를 폭력이라고 문제제기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이러한 전략들을 모두 공격으로 처벌하고 규제하려 한다면 운동의 이름으로 사회적 영역을 말소하는, 정말로 폭력적이고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19) A가 추가 요구사항에서 제기한 이 행위가 왜 성폭력이 아닌지는 2013.5.9. 서울대 “성폭력 대책위” 사건 공개토론회 발제문 중 피해자(류한**을 지칭) 지지모임 발제문의 해당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A가 제기한 이른바 ‘다른 사안’이라는 것은 A가 1차 테이블 이후 요구안에서 제기한 것으로, 여기에서 그녀는 “오직 꽤 지속적으로 이성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연애 감정’이 상호 간에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연애를 시작하려 했으나 “일방적인 관계 단절로 인해 B가 그러한 감정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것이 자신의 “원칙과 주체성을 무너뜨리는” 폭력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연애’에만 동의하겠다는 연애관은 현실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류적 ‘정상성’을 강요하는 보수주의에 불과하다. 연애관계가 얼마나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권력관계가 작용하지 않는다 해도 누구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며, 연애관계가 얼마나 유지되는지가 진정성의 척도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갖게 되었을 경우 이전의 연애관계는 진심이 아니라는 사고야말로 장기간의 일대일 연애라는 특정한 형태의 성애만을 ‘진정한’ 것으로 취급하는 전제가 없고서는 성립될 수 없다.

물론 A가 이러한 연애관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한, A는 이것을 자신의 자유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B가 A의 연애관을 알고, 또한 자신의 감정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A에게 연애를 강요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은폐하고 A를 기망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B의 사과문과 포괄진술을 보든 A의 요청서를 보든, B가 A의 이러한 가치관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다. 사태를 의도적으로 B에 악의적인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B가 이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도 A와 연애를 시작했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

만약 A가 자신의 현실성 없는 연애관을 정 관철하고 싶었다면, B에게 연애관계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겠다는 확답을 받거나, 연애관계를 거부하거나, 혹은 B와 소통·협상하여 자신의 욕망과 의사를 전달하고 그것을 B의 일반적 연애관이나 A와의 관계에서의 욕망과 의사와 조율하였어야 한다. 기간을 설정한 계약연애가 아닌 이상, 연애관계가 언제까지 가리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A는 자신의 연애관을 관철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 B와의 연애를 시작했고 B와의 스킨십에 합의하였으므로, 만약 그래서 그녀의 원칙과 주체성이 무너졌다면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B가 아니라 A 자신이다. 스스로의 원칙과 주체성을 지켜나갈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혼자 내적으로 가지고만 있었던 원칙과 주체성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 지켜주어야 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는 특정한 형태의 성애를 ‘정상’이라고 간주하고 따를 것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거나, 혹은 연애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대가 원하는 연애관에 전적으로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자의 경우 이것은 여성주의의 숙적인 가부장적 결혼 제도를 여성주의의 이름으로 강요하는 일이 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 이것은 윤리적·정치적으로 어떠한 연애도 금지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비록 많은 사람이 연인이 자신의 연애관에 전적으로 부합할 것을 기대할지라도, 이 기대에 완전히 보답하는 것은 어떤 이상적 연인에게도 불가능한 일이며,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연애를 하려면 자신의

2.3.3 사건 해결 조치 도출에서의 비민주성

피해자중심주의는 또한 징계의 수위, 공간분리 등 사건 해결 조치 도출에 있어서 피해자의 요구안이 타당성이 부족해도 별다른 토론 없이 관철되거나, 더 심하게는 그에 대한 이견이 억압되는 방식으로 실천된 바 있다.

(1) 2012년 대책위 사건

위의 2.3.2.3에서 언급된 대책위 사건에서는 폭력조차 아닌 행위가 성폭력으로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 공간분리 등 피해호소인의 요구안이 그대로 집행되었으며, 가해자 및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피해호소인 A가 언어폭력을 휘두르는 것까지 ‘대항폭력’으로 정당화되었다. 대항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행위들은 가해지목인에 대한 욕설을 <자기서사&요구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제한 것, 대책위 테이블에서 가해지목인에 대한 욕설을 한 것 등이 있었으나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열거하기 부적절하고 각주 15번에 링크가 나와 있는 진상조사보고서를 참고하면 된다.

가해지목인들의 소속 조직인 갑에서 이러한 ‘대항폭력’이 지나치다는 입장서를 제출하자, 대책위에 참여한 다른 단위들은 ‘대항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피해자중심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정치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를 들어 A의 대리인은 S 대표에게 “사건 해결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발언하였다. 5월에 <S 입장에 대한 H과 피해자의 입장>이 대리인에 의해 S 대표에게 전달되었는데, 원사건에 대한 A의 해석이 맞으며 S의 이견은 “여성주의 운동의 역사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고, “대항폭력을 묻기 이전에 피해자(A)에게 가해졌던 선차적 폭력부터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라!”는 내용이었다. H은 S에게 그런 입장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2) 2014년 공개된 모 조직 나이주의/성차별적 언어폭력 사건²⁰⁾

2013년 7월 한 연대주점에서, 성인 남성 활동가인 모 조직 회원이 여성 청소년 활동가인 피해자에게 나이주의/성차별적 언어폭력을 하였고, 동석했던 모 조직 학생위원회 회원 4인은 그것을 보고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피해자는 11월에 사건을 민주노총과 그 조직에 제소하였다. 그리고 그 학생 4인 중 1명은 이후 11월에,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가해지목인들과 가해지목인 학생들에 대한 ‘자숙’이라는 이름의 활동정지 조치는 진상조사와 사건성격 규정이 완료되기 이전에 부과되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숙’을 해제하는 데 도중에 합의해주면서, 가해자보다 동석했던 학생들의 ‘자숙’ 기간이 더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된 자숙은 사실상의 활동 정지로서, 거의 징계나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처분은 진상조사와 사건 성격 규정이 완료된 후에 부과되어야 했다. 물론 그 전에도 피해호소인이 요청하면 공간분리를 해야 하지만, 이때의 공간분리는 가해지목인들의 공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상대에게 위임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이것을 ‘성폭력’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내적인 가치관을 이유로 명시적 합의마저 철회하겠다는 것은, 피해호소인이 사실상 완전히 자의적으로 가해지목인을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밖에 될 수 없다.

물론 지금 사회에서 모든 연애 관계에는 권력관계가 작용하므로, 여성이 자신의 연애관을 표현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의 처지를 고려한다는 미명 하에 모든 여성을 행위무능력자로 간주하는 논변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여성의 어떤 의사표현도 권력에 의해 왜곡된 것이므로 그녀의 참된 의사로 간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0)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8091&page=1&s2=subject&s_arg=나이주의에 해당 조직에 의해 공개된 사건.

나라 최대한 협의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또한 양형의 관점에서, 가해를 목인한 사람의 자숙 기간이 직접 가해를 한 사람의 자숙 기간보다 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조직이 활동가로서 부당한 일에 문제제기할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회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책임의 정도가 가해자의 책임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자숙’ 부과 시점과 가해목인자의 자숙 기간에 대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요구안이 다소 과도한데도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보론] 2차 가해 개념의 확장과 그로 인한 토론의 위축

피해자중심주의는 2차 가해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차 가해란 개정 이전 서울대 사회대 반성폭력 학생회칙에 따르면 “사건 신고 이후 가해자 또는 그 주변인이 피해자 및 신고자와 접촉하여 신고를 취소하거나 사건을 공식적으로 해결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것,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 피해자 및 신고자를 협박하는 것, 피해자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 사건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 등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재차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재차 피해를 주는 행위인지에 대해,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판단한다면 이러한 행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제대로 정의되지 않을 경우 성폭력 규정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행위까지 2차 가해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

2차 가해 개념의 이러한 확장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2차 가해자가 될까봐 침묵하는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지적은 자주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다음의 글은 이를 2차 가해 개념의 ‘과잉 의미화’라고 부르고 있다.

엄혜진, <운동사회 성폭력 의제화의 의의와 쟁점>, 페미니즘연구 제9권 1호(2009)에서 발췌

성폭력을 둘러싼 해석이 담보되고 있는 상황은 가장 논란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인 2차 가해 개념의 과잉 의미화에서도 나타난다.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과 그 해결 과정에서 은폐, 왜곡, 방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가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간단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의 의미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물리적 사건 그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한다는 점(김보명, 2007: 67)에서 운동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런데 최근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들에서는 2차 가해 개념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법적으로는 2차 가해 개념도 없지만 운동권 내에서는 2차 가해라는 개념뿐이 없는 거야, 역으로. 그래서 2차 가해로 걸자는 건 대리인 생각이었는데 ○○에게 걸만한 죄목이 없다는 거지.(사례 3)

사례3의 경우 성폭력 사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활동가들과 성폭력 상황을 유도할 수 있는 조직의 비상식적이고 성차별적인 (뒷풀이) 문화를 방지한 관리감독의 미비를 근거로 해당 조직의 책임자를 2차 가해자로 규정했다. 관리감독의 책임을 제기하면서 2차 가해자로 규정하는 일은 운동사회 성폭력 사건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사례3은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일상적인 반성폭력 실천을 강제할 수 있으리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2차 가해’ 개념은 100인위가 제기했던 것보다도 훨씬 확장된 것이다. (중략)

우리 조직에서는 성폭력 사건 대책위 첫 번째 활동이 있었고, 그 중에 2차 가해 사건이었어. 그래서 술자리에서 뒷말하지 말 것을 요청했어. 근데 이게 금언령/금지령이 된 거야. 2차 가해가 갖고 있는 100인위의 후과, 일종의 공포정치가 된 거지. (사례 1)

문제가 되는 건 2차 가해 처리인데, 2차 가해란 건 정말 뜨거운 감자잖아요. 사실 논란은 그걸 중심으로 되는 거죠. 성폭력 하고 그런 게 명백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나? 근데 특히 2차 가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안 해. [2차 가해자가 될까봐] 입 싹 닫고 있는 거지, 남자들 여자들.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지.(사례 2)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는 2차 가해에 대해 운동사회가 반응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사례1과 사례2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를 “금언령”으로 수용하고 조직적인 토론과 성찰을 중지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는 데 있다. 이는 100인위가 운동사회 성폭력을 의제화했을 때 기대했던 바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2차 가해’라는 개념이 피해자 보호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젠더 문제를 환기하는 장치로서 확장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전략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개별 사건 및 개인에 대한 단죄와 공동체 전반의 발본적 성찰의 차원을 뒤섞음으로써 오히려 운동사회의 일상적인 성폭력적,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침묵의 담합에 면죄부를 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피해호소인의 사건 해석에 이견을 제기하거나, 대책위의 절차 처리 방식에 대해 비판을 한 결과 2차 가해자로 몰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대책위 사건일 것이다.

예를 들어, A는 2011년 12월 2일 트위터 상에 구체적인 이유나 맥락은 적시하지 않은 채 운동 사회의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했다는 트윗을 올렸고 그것을 본 S 회원 D가, A가 사건 비공개를 원칙으로 고수하며 가해 지목인 및 가해 지목 단위들에게는 공개적인 해명이나 사건 규정에 대한 공개적 토론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 것에 대한 분노를 세 번의 트윗에 나누어 올렸다. A와 H, G은 그것을 2차 가해로 규정하였다. 비록 표현이 다소 거칠고 감정적이며 트위터라는 공간이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이를 2차 가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단 A가 제기한 사건이 성폭력도 아니고 폭력도 아니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트윗은 일단 피해호소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니라 비공개 원칙의 불공정한 적용에 대한 항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 G과 H, A는 사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 놓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의 개요를 주변에 퍼뜨리고 있었던 반면 S는 비공개 원칙 때문에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항의를 2차 가해로 규정하는 것은 대책위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것이며, D가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들이 무례했다는 비판은 하더라도 그 항의의 요지는 대책위 내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졌어야 했다.

또한 3월 30일 집회에서 A의 대리인이 사회대 학생회장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공간분리를 한 후 사회대 학생회장은 트위터 본인 계정에 “단짠이 단대 정리집회에서 쫓겨나다니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당신(대리인)한테 그냥 부적절한 행동이고 실수였겠지만 나한테 나날이 심해지는 트라우마예요.” “당신이 살아도 내가 살 수 없고 당신이 죽어도 내가 살 수 없군요. 그럼 내가 죽으면 당신은 살 수 있나?” 같은 트윗들을 올렸고, A는 그 트윗들도 2차 가해로 규정한 후 그것이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트윗이므로 2차 가해이며 사과문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사회대 학생회장이 사과하면서도 그 맥락에 대해 소명하고 대책위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서를 제출하자 그 입장서에 대해 A는 ‘사과문의 진정성조차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였고 G 구성원은 그 입장서를 테이블에서 다루지 말 것을 사회대 학생회장에게 설득하였다. 피해호소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은폐 시도도 아닌, 자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표현마저도 피해호소인을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2차 가해로 규정하는 것은 이 개념을 남용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2차 가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토론회에서 피해자 측에 다소 비판적인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당한 사례도 있다. 통진당 이00/충남대련 김00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민주노총 충남본부에서 2013년 8월 20일 열린 토론회에서, 정치조직 <불세비키>의 한 회원이 참여하여, 2차 가해자들인

‘또 다른 피해자모임’을 왜 토론회에 초대하지 않았는지, 공대위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질문이 담고 있는 의견에 대해 비판이나 반론을 할 여지는 있어도, 이러한 질문 자체가 당장 제지되어야 할 2차 가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런데 다른 한 참가자가 이 질문을 듣고는 갑자기 질문자에게 의자를 던지려고 하는 등 화를 내며 폭력적인 반응을 보였고, 사회자나 다른 참가자들이 이를 제대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볼세비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충남 성폭력 사건 공개토론회 참관기>
http://bolky.jinbo.net/index.php?mid=board_FKwQ53&category=308&document_srl=965

Y동지가 둘째 질문까지 마치고 세 번째 질문을 하려고 “셋째”하는 순간, 오른쪽 대각선 쪽에 앉아있던 2~30대로 보이는 남성 참가자(A)가 갑자기 “이런 XX!”하면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친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앉았던 접이식 철제 의자를 들어 올리려 한다. 치켰다는 것이다. 옆에 있던 다른 남성 참가자가 말한다.

돌발적 상황에 당황해 하던 Y동지가 외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꿈쩍 않는다. 다시 외친다. “사과하세요!” 그러자 A가 다시 “에이 XX!”하며 다시 의자를 들어 올리려 한다. 뒤쪽에 앉았던 다른 젊은 남성 참가자(B)가 반말로 가세한다. “거 하고 싶은 말이나 해!”

Y: “사과해요!”

B: “잔말 말고 하던 말이나 하라구!”

A가 밖으로 나가면서 Y동지에게 위협조로 말한다. “사과 받고 싶어? 사과 받고 싶으면 따라 나와!”

사회자, 발제자들 포함 참석한 그 누구도 방금의 욕설과 폭력적 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잘했다는 표정들.

사회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저 질문하세요.

Y동지가 분을 애써 가라앉히고 마저 질문하려 하자 누군가 또 탄죽을 건다.

C: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 두세 가지씩 질문합니까?

D: 앞으로 누구든지 발언할 때 소속을 밝히도록 하죠.

물론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토론회 주최측 및 공대위 측의 해명을 들어 봐야 확신할 수 있지만, 이들은 <볼세비키>에서 공개적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답을 한 바가 없다고 한다. <볼세비키> 회원이 한 질문은 2차 가해도 아니었고, 설령 2차 가해였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요약하면, 피해호소인의 견해나 대책위원회의 사건 해결 방식에 대해 제기되는 이견과 비판이, 종종 2차 가해라는 이름으로, 부당하게 억압된 바 있다.

2.4 소결: 총체적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이제까지 피해자중심주의의 정의, 긍정적 의의, 그리고 실천태를 살펴보았다. 피해자중심주의는 일반적으로 (1)사실관계 확정의 측면에서, 가해지목인의 진술과 피해호소인의 진술이 충돌할 때 피해호소인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신뢰하고, (2)사건 성격 규정의 측면에서, 해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예컨대 모든 대책 위원들이) 피해호소인/피해자의 관점에서 서서 사건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토대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며, (3)조치 도출의 측면에서, 다른 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보다는 피해호소인/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가해자중심주의 사회에서 피해자중심주의는 많은 피해호소인들, 피해자들에게 언어가 되고 희망이 되었다. 가해자에게 피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냥 장난이었다는 이유

로, 좋아해서 그랬다는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고, 피해호소인이 고립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사건을 공동체의 문제로 해결하는 절차들을 마련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어 주었으며 무엇보다 현재의 성차별적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호소인이 다른 범죄의 피해호소인과 달리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임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중심주의가,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 진실에 접근하기보다는 가피해 구도를 선구정하는 방식으로, 사건 성격 규정에 있어 피해호소인의 규정만을 절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조치 도출의 측면에서 피해호소인의 주장만을 절대화하는 방식으로 실천되는 문제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실천태는 피해자중심주의의 본질인가, 아니면 오남용에 불과한가? 이에 대해 답하려면 훨씬 더 많은 사례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이 문서화되어 공개되는 성폭력 사건의 비중이 극히 낮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하여 해결되었지만 피해자 권력화 없이 제대로 해결된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며, 여기에 나온 사건들은 그야말로 예외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해자중심주의의 실천태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며, 그에 대한 근거 역시 존재하기에, 반성폭력 운동이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피해자중심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며, 그런 오남용 사례에 대한 공격은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여성혐오자들의 반격(backlash)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에서 발생한 바 있는, 개인승배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억압이 곧 사회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은 악선전이나 오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준거로 삼는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노동자계급의 아래로부터의 자기해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며 그런 국가들에서 발생했던 일은 변질이며 일탈일 뿐이다. 이를 근거로 한 공격은 악선전에 불과하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실제로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해선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 애초에 그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대중에게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물론 왜곡을 왜곡이라고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별개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것이 대중운동을 건설하려는 활동가의 자세이다.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반성폭력 운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해자중심주의의 실천태로 드러난 문제점의 근본 원인은 객관성 개념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고 그 자리에 피해호소인/피해자의 이해관계를 대신 놓은 것이다. 현 사회에서 객관성이라고 포장되는 극도의 성차별, 편향성에 대한 비판과 거부는 피해자중심주의의 긍정적 의의였다. 하지만 그것이 객관성이라는 개념 자체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거부로 이어지면서 진실을 규명하거나 사건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게 되었다. 민주적이어야 하는 공동체적 해결은 어느새 공동체 전체가 피해호소인의 편에 서서 피해호소인의 생각을 받아들여려고 노력하는 과정으로 바뀌었다.

상당히 드문 경우인 무고가 아니라면, 피해호소인/피해자는 억압받고 상처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길과 그 공동체가 더욱 인권 친화적으로 되어가는 길은 실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그 두 가지 길이 개념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두 길은 결과적으로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임할 때 우리는 피해호소인/피해자의 입장 및 요구와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반성폭력 운동의 목표, 공동체의 정의(justice)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정** 사건에 대한 100인위의 다음과 같은 논평은 피해호소인/피해자라는 존재 자체가 마치 반성폭력 운동의 대의 그 자체처럼 절대화되고 그 사람과 가해지목인 사이의 갈등과 대립 역시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전선처럼 화해불가능한 정치적 전선으로 절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전선에 놓이게 되며,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어화한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누구의 편에 서서 판단할 것인가' 하는 당파적 입장의 결정이다. 우리가 주장한 성폭력 개념이 아직 '상식'이 아닌 것은 분명하나, 문제는 이것을 '상식'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탬 것인가 아니면 '상식'이 되지 못하게 하는 데 힘을 보탬 것인가이다.”

개별 사건에서 피해호소인/피해자의 편에 서는 실천은 성 평등한 관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합리적으로 파악한 결과로서 도출될 수 있는 것이지, 피해호소인/피해자의 편에 서는 실천 자체가 올바른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중심주의가 보여주었던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반성폭력 운동이 앞으로 견지해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3.1. 성 인지적 객관성은 무엇인가?

성 인지적 객관성 하에서 폭력은 권리의 침해로,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규정될 수 있다. 사회대 개정 학생회칙은 성폭력을 이렇게 규정한다. “성폭력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한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이다. 이는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 유무형의 다양한 종류를 포괄한다. 당사자가 한 명인지 다수인지, 피해자가 성폭력이 있었음을 아는지 알지 못하는지는 성격 규정과 관련이 없다.”²¹⁾

이러한 규정은 젠더 구조에 기반한 모든 행동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광의의 성폭력’ 개념에 비하면 다소 협소하며, (여성인) 피해호소인이 스스로 피해로 규정한 것이 무조건적으로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한 단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나 성별권력관계에 기반하되 폭력은 아닌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규정하지 않는다.²²⁾ 성폭력은 오직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의 부재에 근거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일어난 것이다. “어떤 행위가 성폭력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이다.”²³⁾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 아래와 같이 네 가지의 방식을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²⁴⁾ 우선 성폭력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우선 피해호소인을 의심하고 보는 식의 남성중심적 관점이 있다. 피해호소인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며 그의 주장의 신뢰도를 깎아내리거나, 피해호소인이 개인적인 목적을 이유로 “꽃뱀” 짓을 했으리라고 함부로 추측하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성매적 객관성’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남성의 손을 들지는 않지만, 객관성을 참칭하여 광범위한 젠더 위계의 존재와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상사의 성적 접촉을 거부하지 못한 여직원이 있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관점은 권력

2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 (이하 ‘개정회칙’) 제5조.

22) 개정회칙 제5조 2항 및 해설.

23) 개정회칙 제5조 3항.

24) 아래의 서술은 썸앤파커스 성폭력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으나, 일반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성맹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류적인 통념들에 대항하여 나온 것이 ‘피해자중심주의’이다. 피해자중심주의는 피해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성폭력 사건의 서사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따르면 성맹적 객관성의 해석은, 자신의 정규적 전환이 걸려 있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피해자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해석이다. ‘성 인지적 객관성’ 역시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지만, 그 논리적인 경로는 다르다. 성 인지적 객관성 하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은 동의로 해석해야 한다’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꼭 동의는 아니다’가, ‘상대가 거부해야 성폭력이다’가 아니라 ‘상대가 동의해야 성폭력이 아니다’가 ‘객관적’인 전제로 여겨진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명시적인 거부 없었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는 사실이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행동을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이처럼 대안적인 시도를 제시할 때에는 피해자중심주의가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했던 바로 그 지점, 즉 기존의 사회통념과 사법부가 전유하는 성맹적 객관성이 그 자체로 성차별을 내재하여 젠더 억압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똑같은 정도로 거부해야 마땅하다. 피해자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그것의 통찰과 성과를 저버리고서는 어떤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객관성’을 표방하고 있는 성 인지적 객관성은 이러한 요구에 답하면서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요구를 우리는 우선 성 인지적 객관성의 수식어로 자리하고 있는 ‘성인지’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에 있어 개별적인 상황과 맥락에 대한 고려 및 반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현존하는 젠더 위계를 실제로 표면화하고 공론화하는 데, 나아가 ‘객관화’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피해자중심주의의 실천가들이 역설해왔던 점, 즉 여성혐오의 구조가 사회적으로 확고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통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현되고 있다는 점이 성폭력 문제해결 원칙의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될 것이 요구된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상황은 분명 가해자의 상황과 같지 않다. 피해자는 앞서 언급한 남성중심적 관점이나 조직 보위의 논리, 혹은 단순한 무지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슬한 편견과 2차 가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상처입은 것 자체로 이미 취약해진 개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모든 입증 책임을 떠맡고, 공동체는 그가 확실히 입증할 때까지 사실상 방관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듯 성폭력 상황에 있어 어느 정도 일반화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특수한 맥락들은 공동체적 해결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시선은 ‘성 인지적’이라는 수식어가 수식하고 있는 대상으로 향한다. 왜 ‘객관성’인가?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잠시 미루고, 우리는 아마 대다수가 제기할 보다 구체화된 질문에 먼저 답할 것이다. 왜 또 객관성인가? 왜 수십년 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운동 주체들이 치열한 고민을 통해 그 모순을 폭로하고 전복하고자 해 왔던 바로 그 개념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인가? 결국 성 인지적 객관성은, 그것이 아무리 스스로의 의미의 방점을 앞의 수식어에 찍으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단 하나의 단어 선택으로 인해 후퇴로 규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러한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 인지적 객관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본다. 우선 앞서 밝힌 성 인지적 객관성의 ‘성 인지적’인 성격이 그러한 퇴보를 막고, 오히려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다만 성 인지적 객관성은 의미의 전복을 통하여 객관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전복의 칼날을 객관성 자체에 들이대어 객관성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다. 즉, 성폭력 당사자를 비롯하여, 고유한 맥락 속 개별적 경험을 가진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어떤 공동의 준거를 구성해나갈 수 있는, 또한 동시에 그 구성해나감의 시도가 쉽지 않다고 하여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회의하거나 포기해버리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객관성의 의미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서울대 사회대 개정 반성폭력회칙의 5조 해설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예시로 나열되어 있다. 그러나 해설에 따르면 이는 “성폭력이 되는 행위의 포괄적인 목록이 아니라 일련의 사례” 일 뿐이며, 회칙에 “열거되지 않은 행동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더 추상적인 차원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개념화하고 있는 4조는 존중받을 권리, 거부할 권리, 사생활의 권리와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성적 자기결정권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그것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한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성 인지적 객관성 하에서 성폭력은 성기의 강제적 삽입, 원치 않은 신체 접촉과 같은 구체적이고 제한된 내용에 의해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구체적인 수준에서 당사자들의 경험과 맥락이 포괄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민주적 토의를 통하여 스스로의 내용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해나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러므로 성 인지적 객관성이 객관성으로 “회귀”한다는 지적은 이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성인지성과 반성성을 다소 도외시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처음의 질문은 남아 있다. 그 형태와 방식과는 상관 없이, 왜 ‘객관성’을 도입하는가? 이것은 결국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이라는 우리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어떤 개별 공동체는 그 나름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성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개별 구성원의 자의로 완전히 소급될 수 없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공동체적’ 원칙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 될 것이다.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이 실제로 보여주었던 이런 “피해자 권력화”를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이든 간에 공동의 근거, 객관화와 보편화가 가능한 원칙을 필요로 한다.

성 인지적 객관성 하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보편적이지 객관적인 권리인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나타난다. 공동체의 기초적인 규범적 질서로서 권리는 오늘날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모든 개별 인간이 존엄하다는 전제나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술을, 그것들이 단지 객관성을 추구하고 보편화를 시도한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받아안은 객관성 하에서 획일성으로서의 객관성은 충분히 지양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공동체의 특정한 현실이 구체적인 상황 맥락 속에서 개인에게 어떻게 작용하여 결국에는 “객관적인” 권리 침해로 나타나는지를 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보편적 기준으로서의 권리를 도입하는 데서 오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아마도 사건 해결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성폭력은 어쨌든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객관적 진상조사가 공동체적 해결에 있어 보다 중요한 입지를 지니게 된다. 가/피해 구도가 미리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폭력 사건을 성립시키는 권리의 침해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가능한 한 최대한 알아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건의 성격이 피해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규정되지도 않는다. 권리의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기존의 성적 자기결정권 관념에 협소한 지점이 없진 않았는지 등에 대해 사건과 관련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가 중요해진다. 해결 조치의 도출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의사만이 고려되지 않으며, 구성원들 전체의 고민과 참여가 요청된다. 조치 도출은 가해 지목인을 악마화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편에 서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확보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하여, 민주적 기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편화되는* - 원칙을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만, 애초에 진상조사를 통한 사건 성격의 확실한 규명 자체가 쉽지 않은 성폭력의 특수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사건 해결 과정이 성 인지적이기 위해서는 이 지점을 의식하여 몇 가지의 권리들이 특별히 언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이 없었다는 결론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호소인이 무고를 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으므로, 성폭력이 저질러졌다는 판단 못지않게 그 반대의 판단을 내리는 데에서도 신중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가 확보될 때에만 피해자가 사건 해결 절차에서 충분히 발언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으므로, 공간분리나 대리인 선임, 제척권, 치유를 지원받을 권리 등의 일련의 권리들을 피해자에게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성 인지적 객관성은 피해자중심주의로부터의 후퇴가 아니다. 실천의 차원에서 그것은 오히려 피해자중심주의보다 훨씬 도전적일 수 있다. 그것은 피해자중심주의가 공동체 내의 완고한 가부장적 질서는 현실과 마주하여 공동체 속에서 공격적으로 전개해나갔던 실천들을 거꾸로 문제 해결의 실천적 전제로 삼는다. 말하자면, 성 인지적 객관성의 주체는 *이/미* 성 인지적이다. 이 점을 현실에 대입시켜 보면, 여전히 성맹적인 상당수의 (운동) 주체들이 성 인지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주의적 운동의 필요성을 발생시킨다. 그런데 여성주의적 운동이 젠더 구조를 폭로하고 전복하여 성해방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면, 젠더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는 여성주의적 운동을 가장 사적인 일상에서부터 가장 유물론적인 계급투쟁의 현장에서까지 *당연히* 실천해야 한다. 성폭력이 어떻게 정의되는 간에 삶의 모든 방면에서, 공동체의 모든 부문에서 젠더 구조의 억압성을 폭로하고 고쳐 나가는 운동을 열정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당위는 사실 언제나 존재했다.

그러한 당위의 상부에서 우리는 ‘공동체 내부의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특수한 문제상황에 직면하였고, 이 상황이 문제 해결의 원칙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았다. 따라서 성 인지적 객관성 하에서는 피해자의 견해와 구별되는 공동체 고유의 규범적 질서가 재상정된다. 그를 기반으로 공동체 구성원 각각은 스스로의 모든 민주적 잠재력과 성 인지적 반성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것을 요구받는다. 관련자들의 사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진상조사가 불가능한 영역들에 대해서도 일관성이나 타당성, 정황과 같은 다른 근거를 토대로 최대한 심사숙고하여 결론을 끌어내야 하고, 그와는 별개로 문제제기된 지점과 관련된 공동체 내부의 젠더 구조에 대해 최대한 토론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요구사항은 많은 공동체들에서는 요원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실천적 부담은 분명히 성 인지적 객관성의 중요한 난점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단지 현실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실천을 위해 보다 올바른 원칙을 수립하기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올바른 원칙을 가질 때 운동이 더 진전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물론, 그러한 원칙은 이전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실천 속에서만 정립되어 나갈 수 있다.

3.2 성 인지적 객관성이 피해자중심주의로부터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점

상술했듯, 피해자중심주의는 그 과정에서 ‘비합리적’이거나 ‘피해망상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 관점에서 사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해 그 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많은 진리들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이에 입각하여 올바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여러 원칙과 제도들을 입법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인식과 원칙, 제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피해자중심주의가 아닌 다른 틀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한 절실히 필요하며, 원론적으로 여성의 편에 선다는 입장(여성 당사자주의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특수한 입장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모든 성에게 공정하고자 하는 입장(성 인지적 관점)에서도 필수적이다.

3.2.1 총론의 차원에서: 공동체적 해결 절차는 전 과정에서 성 인지적이어야 한다.

이 사회는 여성이, 또 성폭력 피해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는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이것을 보정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성 인지적 객관성은 진공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이상적인 상태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공동체 성원들이 여성해방의 주체가 되어 기존의 남성중심적 객관성 개념을 극

복하고 대안적 객관성을 세워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공동체는 평상시 성원들에게 성 인지적인 관점을 교육하고 내규 제정 등의 사업을 통해 구성원들이 대안적인 규범을 형성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며, 일상적으로 공동체가 얼마나 성평등하며 인권친화적인지 점검하고 토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특별한 교육이나 토론회를 열어 공동체에 성폭력에 관한 성 인지적 관점을 환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을 책임지는 주체들은 어떤 개입도 없이 진행만 맡는다는 식으로 논의를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 인지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야 한다. 사회적 편견을 재생산하고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는 발언들은 ‘자유로운 의견’으로서 격려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되어야 한다.

3.2.2 성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사건 성격 규정에서

(1)사건의 성격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가해자에게 꼭 피해자를 해칠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언행에 노출되었다면 그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다. 현재 성폭력에 관한 대부분의 규약들은 남성/가해자의 ‘조심하지 않아도 될 자유’와 여성/피해자의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및 ‘공동체의 성 평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으며 명백히 후자를 우선하고 있으며, 전자와 달리 후자를 공동체가 개입해서 강제해서라도 보장해야 할 권리(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평등권)로 규정하고 보호한다. 이것은 전자보다 후자가 인간의 행복과 사회 정의에 훨씬 더 중대하기 때문에 정당한 기준이며, 후자가 사회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무시당하고 유린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치적인 원칙이기도 하다.

(2)피해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입증책임이 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그것이 어떤 권리의 침해인지를 논증하는 것도 지식, 정치적 자신감, 정신적 시간적 여력 등 많은 자원이 필요한 일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이를 혼자 힘으로 입증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술한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하고도 침묵하게 만드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진상 규명과 성격 규명 모두의 책임은 공동체에 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피해자의 말을 입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피해자 편에서 입증을 위해 힘을 지지자, 지원자가 있어야 하며 이것은 일부 활동가들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절차의 일부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즉 공동체가 대리인이나 지지모임 등 지지 세력을 피해호소인에게 조직해줄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진상 규명이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부분 의존할 수는 있으나, 이 진술을 채집하고 정리하고 상반되는 진술을 논박하는 일 등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이 맡아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물론 원할 경우 이런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것도 피해자의 권리이다.)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는 이러한 책임을 제도화하는 하나의 형태이다. 다만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수의 지원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대리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지모임이나 지원자 그룹 결성 등을 공동체에서 말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활동가들은 평소 피해호소인/피해자를 지지·지원하는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럴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3)성폭력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보다 ‘악한 증거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근대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물증 없이 진술이나 정황 증거만으로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며, 다른 사회 규범도 이런 기준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증거 없이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성폭력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 물

증이 잘 남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에 무죄추정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다수의 성폭력 사건을 처벌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이는 결국 많은 여성들이 속수무책으로 성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방관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성폭력의 경우, 증거주의를 폐기하지는 않되 진술의 일관성이나 상황증거도 증거로 인정하는 등 보다 ‘약한 증거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보수적인 국가 사법기구조차 이런 지적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

3.2.3. 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보호와 배려의 측면에서

(1) 피해호소인/피해자는 상처받은 개인이며,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젠더권력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피해호소인/피해자는 상처를 입은 개인으로서 공동체 앞에 선다는 점에서 이미 그 자체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대리인을 두어 절차나 소통을 대신하게 할 권리, 가해자나 이는 사람 등 피해자가 마주보기 곤란한 사람을 절차에서 제척할 권리, 가해자로부터 재차 폭력이나 위협을 당하거나 트라우마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간적으로 분리될 권리, 심리적 치유를 위해 지원받을 권리 등을 보장함으로써 피해호소인/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고 또다시 상처를 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또한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분노, 우울, 무기력, 회피 등이 일반적인 증상이며 피해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개인적 정신질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 물론 피해자가 그런 감정 때문에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이와 별개로 감정들 자체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매도당하지 않고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상술했듯이 피해 입증은 공동체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2)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이며 사건 처리에 가장 많은 영향 받는 사람이므로 이에 맞는 발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의 의사가 꼭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안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일수록 발언권, 결정권이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원리이다. 피해호소인/피해자는 사건 처리 전 과정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는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사건 전에 피해호소인/피해자에게 절차를 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절차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진행 상황을 알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이 가능한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피해호소인/피해자의 명시적 요구를 따르는 것이 옳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라도, 피해호소인/피해자가 어떤 권리를 회복하거나 확보하기 위해 또는 어떤 효과를 생각하여 이러한 요구를 제출한 것인지 최대한 물어보고 파악하여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또 피해자의 요구가 따로 없더라도 사건을 처리할 때 고려하는 결과 중에서 피해자에게 미칠 효과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효과는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치를 실행했을 때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겪을 만한 합리적 개연성이 있는 결과를 이야기한다.)

(3) 성폭력 피해자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에 노출되기 쉬우며 여기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사회적 낙인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고,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면 사생활이 노출되기도 쉽다. 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피해자는 신상이 밝혀지지 않고 익명으로 남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사건을 공론화했을 때, 공동체는 사실관계나 성격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 외에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에 대한 책임전가를 당하거나(피해자유발론), 사생활 성생활에 대한 음해, 과민하다는 비난 등 2차 가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 피

해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를 성폭력에 준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제재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조치이다. 또한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고 2차 가해에 대응할 지원자들이 공동체에서 나와야 한다.

3.3 성 인지적 객관성이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 인지적 객관성이 피해자 중심주의와 공유하는 지점들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다.

3.3.1 객관성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진정한 객관성을 확립해나간다

첫째, 성폭력 사건 해결의 전제이자 반성폭력 운동의 목표가 객관성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객관성을 확립해나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현재의 사회가 ‘객관성’이라는 이름하에 관철시키고 있는 가해자 옹호 및 피해자 책임론은 철폐되어야 할 대상이다. 남성/가해자 중심주의가 객관성을 참칭하고 있을 때, 이 사실을 폭로하고 대중에게 알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객관성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전선에 놓이게 되며,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어화한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누구의 편에 서서 판단할 것인가' 하는 당파적 입장의 결정이다.”²⁵⁾라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반성폭력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공존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정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사람들이 이 질서를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별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에서도 성평등한, 진정한 객관성을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객관성이란 기존 사회의 남성/가해자 중심성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의 시각을 아우르는 성평등한 관점을 말한다. 기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시각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기울어진 권력구조를 인지하고 있어야 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기에, 성 인지적 객관성이 진정한 객관성이 될 것이다. 성 인지적 객관성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며, 소수가 그 내용을 규정하지 수도 없다.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3.3.2 공동체적 해결의 최종적, 궁극적 목표는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보다는 공동체의 정의와 신뢰 회복이다

둘째,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에 있어서, 제1목표는 공동체의 복원과 신뢰 회복이라는 점이다. 성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이지만, 공동체의 성폭력 사건은 공동체의 문제 또한 야기한다. 조직과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와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권리와 동등한 존엄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두 축인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를 훼손함으로써 이것이 흔들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사적인 해결이나 법적 절차를 밟는 대신 공동체 내에 문제제기하게 되는 맥락도 대부분 이 연장선상에 있다. 가해자의 처벌 그 자체보다도, 공동체 관계 속에서 성폭력 사건이 문제임을 승인받고 모종의 조치도 취해짐으로써 준거집단으로 삼았던 공동체가 정의로운 곳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은 사회구조적 권력관계에 의한 폭력이다. 그리고 공동체 성폭력 사건은, 이러한 젠더 구조가 공동체의 문화에 스며들어 일상적으로 행해지다가 그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사건

25) 정** 사건에 대한 100인위 논평

화'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은 공동체의 문화가 반여성적인 지점들을 허용해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공동체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공존하는 정의로운 곳이라는 본래 믿음에 걸맞게 변화/복원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복원은 사건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동체의 정의를 회복하고 신뢰를 되찾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피해자의 회복 및 치유를 위한 길일 뿐 아니라, 사회의 불균등한 젠더권력 구조와 맞서 싸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는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가 성폭력 사건의 해결 전반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피해자 개인의 회복과 치유는 물론 중요한 부분이며, 공동체는 피해자의 안전 보호, 심리치료 지원,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지지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기 등의 방법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공적인 해결 절차가 추구해야 할 최종목표가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인 것은 아니다. 달성해야 할 목표는 '성 평등'이며, 이것을 공동체 차원에서 재출하자면 공동체의 복원과 신뢰 회복인 것이다.

3.3.3 소결: 해결 절차상의 차이점

*성 인지적 객관성 원칙에 입각한 구체적인 해결 절차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반성폭력 학생회칙(2013년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두 가지 차이로 인해 성 인지적 객관성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택했던 비공개주의를 채택하지 않는다. 대신, 사실관계 조사 이후의 사건 성격 규정 단계에서부터 공동체 구성원 상당수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토론을 원칙으로 삼는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 대책위 모델 등도 혼용할 수 있고 제한적으로 사건 비공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나, 사건의 공론화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며 교훈을 얻어내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다. 물론, 사건의 공개수준은 조절할 수 있으며 어떠한 때에도 실명 공개는 하지 않게 된다. (실명 공개는 그 자체로 처벌의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또한, 성 인지적 객관성은 피해자를 사건 해결절차의 중심에 두었던 피해자 중심주의와 달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성폭력 사건 해결의 주체로 세운다. 물론 피해자의 감정과 고통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피해자의 것이며, 타인이 규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성폭력 피해가 일반적으로 남길 가능성이 높은 감정이나 느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감정이 아니라 피해자의 특정한 주장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주장을 포함하여 사건의 성격과 내려져야 할 조치 등에 관해서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서서 고민해야 한다. 공동체적 토론의 과정은 성폭력 사건의 해결 절차이면서 동시에 다수를 설득해나가는 과정이자 모든 구성원을 여성주의적 주체로 세우는 과정일 것이다.

공동체적 토론이 해결 절차의 일부로 포함된 이상, 앞서 2.1.2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실천적으로 안고 있었던 문제점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관계 조사는 가/피해 선규정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사건 규정과 조치 도출은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자의적 규정과 비민주성으로부터 한걸 자유롭다. 성폭력 사건 해결절차의 초기에서부터 토론을 필수적인 단계로 삼다보면, 2차 가해로 낙인찍힐 것이 두려워 침묵하게 되는 경향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3.4 성 인지적 객관성에서 보완이 필요한 난점들

그러나 성 인지적 객관성이 성폭력 사건을 원활하고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보완이 필요하다.

고심을 다해 고안해내었음에도, 아직까지 한 건의 성폭력 사건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되어 본 적 없는 원칙이 안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했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으려면 현실적인 절차와 단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답쟁이가 고민하여 마련해본 보완책은 다음과 같다.

(1)공동체 내 성폭력 해결 과정에서 민주적 토론이 사회통념을 승인하지 않고 성 인지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 사회의 기울어진 젠더 권력 구조를 인지한 상태라면, 토론을 통한 공동체적 해결이 성차별적 사회통념을 승인하는 거수기가 될 위험성에 대해 경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성차별적 편견이 사회통념으로 다수의 머릿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성 인지적인 방향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려면 제도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공동체적 해결의 필요성과 민주적 토론의 의의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환류해야 한다. 어느 정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참여했던 대책위와 달리, 성 인지적 객관성은 공동체 구성원 상당수가 참여하는 토론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토론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설명해줌으로써 토론이 분명한 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공동체적 해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울어진 젠더 권력 구조와, 그것이 녹아들어 있는 공동체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토론 절차가 형식적인 것으로 축소되고 기존과 같이 대다수가 침묵하며 피해자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과정이 필수적이다.

둘째,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의 규칙을 합의하여 만들고, 그것을 해결 절차 전반에서 관철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호소인의 행실을 문제 삼는 발언을 금지하고 인신공격적 발언을 제재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토론 과정에서 위반하는 사람이 생기면 적절한 조치-경고, 일정 시간 발언금지, 강제퇴장 등-를 취해야 한다. 규칙을 합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피해호소인에게 대리인과 지지모임을 가질 권리를 주어야 한다. 단순히 대리인과 지지모임을 둘 수 있도록 허락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자력으로 구하지 못할 경우 책임지고 조직해주어야 하며 지지모임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지모임 구성원들이 경험이 미비할 경우 외부 상담기관을 연결해주어서 자문을 받게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할 의무는 가해지목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호소인이 적대적이거나 열악한 상황에 당면하게 되는 현실 때문이다.

넷째, 일상적인 성 평등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다. 평소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차별적인 사회 통념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행히도-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없었거나, 있었다더라도 형식적인 연례행사나 다름 없었다면, 성폭력 사건이 접수된 시점이라도 성 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사건 정보의 공개수위에 관하여, 효과적 토론의 필요와 사생활 보호의 필요가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피해자의 요청과 각 사건의 특징, 공동체의 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론화가 결정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정보공개 수준-즉,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효과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건의 상세정보가 많이 공개될수록 좋겠지만, 사건 당사자가 노출되고 사생활이 침해당할 위험성도 동시에 높아지게 된다. 몇몇 경우에는 효과적 토론의 필요

와 사생활 보호의 필요가 심각하게 충돌하게 되기도 한다.

첫째, 피해호소인에게 선택가능한 절차와 그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주어야 한다. 아무리 정보공개를 최소한도로 줄인다고 해도 완전 비공개가 아닌 이상, 공론화를 한다면 당사자가 누군지 알려지게 될 위험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위험성을 최소한도로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과 별도로, 피해호소인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진상조사만을 해주거나, 상담기관이나 사법기관을 연계해주거나, 가해지목인과의 화해와 중재를 돕는 등의 선택지도 유효하다. 그럼에도 피해호소인이 공동체 내의 공적 해결절차를 밟고자 희망한다면, 공론화가 불가피하며 공개 범위에 대해서 의논해야 할 것임을 알려준다. 피해호소인의 이 권리는 사건 해결절차 전반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피해호소인은 계속해서 절차 진행 과정을 보고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 지점들에 대한 정보는 지우거나 변경하여 제공해야 한다. 어느 부분을 지우거나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비공개 요청을 존중하되, 사건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핵심적인 요소라면 설득과 타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공론화에 앞서 사건 당사자가 특정되는 것의 부정적인 효과(사생활 침해, 인신공격의 가능성, 가/피해 구도만 심화되고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이 사상되는 것 등)를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신상 캐기, 마녀사냥, 소문 퍼트리기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일어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글 삭제 요청, 정정 글 업로드 요청, 별도의 징계위 열기, 이후 절차를 통해 가해자임이 확실해진다면 징계수위 상향 조정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3)사건 해결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해당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할 만한 역량이 없을 때, 피해자는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긍정적이다. 다만, 외부 전문가가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역할 분배와 지위 등에 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일단,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개입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심리상담가, 피해자의 대리인, 성 평등 교육의 강연자 혹은 토론의 사회자 등 다양한 지위로 외부 전문가가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는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일지 모르나 해당 공동체의 사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의 수준이나 적합한 징계 방식 등을 논의하는 것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 전문가가 전문성으로 인해 갖는 권위가 부적합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반성폭력 운동이 대중에게 줄 인상; 기술적인 문제

그럼 토론만 하면 무조건 좋은 해결책이 도출되는가? 반성폭력 운동의 필요성은 더 이상 없는 것인가? 공동체적 토론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계속해서 토론을 할 것이지 왜 반성폭력 운동이 필요한가?

위와 같은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반성폭력 운동의 목표를 달리 둘 때라고 답변할 수 있다. 반성폭력 운동의 태동기에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장해서 경각심을 주고, 피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그것조차 너무나도 힘든 목표일 뿐 아니라- 시급하고 유효한 운동의 전략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토론을 통해 성평등한 새로운 질서를 고안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드는 것이 반성폭력 운동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성 인지적 객관성과 공동체적 토론은 이러한 반성폭력 운동의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해낸 두 가지 수단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 : 성인지적 객관성은 가능한가” 토론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김보화/파이

0. 들어가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벽’과 같이 느껴지던 피해자중심주의에 문제제기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담쟁이’ 여러분의 노력과 고민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2000년 초, 운동사회 성폭력 해결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언어화되기 시작한 피해자중심주의는 늘 비판을 넘어 비난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으나, 여전히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현재에는 심지어 기계적, 도구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 글은 그러한 ‘왜곡된’ 해결과정에 대한 물음을 시작하고, 또 다른 언어와 개념, 공동체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시작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논의를 풍부하게 나누기 위한 저의 생각과 물음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백인위 이후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처리의 과정 및 문제점

운동사회²⁶⁾ 내 여성운동가들이 1980-90년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문제제기할 때만 해도, 성폭력은 국가에 의한 운동권 탄압으로 인식되었고, 계급/민족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대학 내 성정치 운동, 반성폭력학칙제정운동, 자치규약제정운동, 99년 전국 여성노동조합의 건설, 여성단체의 반성폭력 운동 활성화와 제도화 운동의 성과 등에 힘입어 2000년 12월,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이하 백인위)가 깃발을 들면서, 그/녀들은 더 이상 ‘외부’가 아닌 ‘내부’의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인위는 그것의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팽배한 공동체 문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했던 선택이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내부적으로 피해 여성들을 여성보호의 맥락으로 진행한 점, 이들의 활동방식이 운동사회로부터 성폭력을 더 이해받지 못하고 폭력적, 위협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여 성폭력에 대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한 점(황정미, 2001), 내부/외부적 소통과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고, ‘개인’의 문제를 강조하는 ‘해결’의 문제로 관행화된 점, 피해경험자가 순진하고 나약한 수동적 지위로 환원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점,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함과 성적으로 자율적인 여성이라는 주체성이 양립되기 어려움 등, 성폭력의 의제화에는 성공했지만 페미니즘을 의제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엄혜진, 2009). 즉, 성폭력을 토론하고 의제로 삼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단호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이중 구조만 남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 문제는 건드리거나 개입하면 ‘큰일’ 나는 ‘무엇’으로 음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회적으로 성폭력이 제도화되고, 공동체내 반성폭력 운동이 다소 주춤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공동체/운동사회 내 많은 사건들에서 1차 성폭력 신고 뿐 아니라 2차 가해 신고가 많아지기

26) 운동사회는 사회 속의 또 다른 사회로서, 특정한 사람/집단을 일컫는 ‘운동권’이나 추상적인 ‘진보진영’이라는 표현을 넘어 한국 진보운동의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력을 정식화하고 그에 준하는 성찰과 책임을 촉구하고자 ‘운동사회’라는 표현으로 제안되기도 했다(엄혜진, 2009 : 39). 운동사회는 경계를 구분짓기 모호한 특정 개인, 조직을 모두 포괄하는 말로서, 한국의 경우 군사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상대적으로 도덕적/윤리적이기를 기대받는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전체화하기 어려운 것은 수십년동안 자생적(?)으로, 또한 서로 경합하면서 만들어진 조직(혹은 정파)에 따른 특유의 규칙과 노선, 문화, 감수성, 네트워크, 그리고 자부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여성은 20여년 전부터 지적되어 오듯이 ‘과잉 남성화’됨으로써 버릴 수 있었고, 여성은 ‘애써 가르칠 필요가 없는’ 존재로 버텼다(조순경, 김혜숙, 1995). 또한 지배집단으로부터 운동사회의 도덕성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합세하면서 여성을 더욱 침묵시켰다(박선미, 2002).

시작했는데, 한 차례의 반성폭력운동이 훑고 지나간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비밀주의, 피해자의 고통 강조,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사건 해결 관행들이었고, 행간의 논쟁들이나 소통, 정치적 의미들이 사라지면서 피해자의 '불편함'이 모두 가해로 설명되고 '처리'되어 버리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과잉 피해자화, 과잉 가해자화, 과잉 사건화, 과잉 의미화 등, 이는 피해자의 주체성, 정체성, 이미지가 고정된 모습으로 획일화되면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즉, '고통'스러운 피해자라는 이미지가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성폭력처럼 복잡한 의미 투쟁의 장이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2000년대 이후 공동체 내에 있는 여성, 혹은 여성주의자들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조직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도록 요구, 강요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남성운동가, 조직, 공동체는 노력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받아들여려고 하거나,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현상들이 관례적으로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즉, 공동체가 함께 여성주의적 관점을 갖기 위해 노력하거나 여성주의자를 발굴하고 재생산하려는 노력보다 조직 내 소수의 여성주의자들이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진보의 쓰레기통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여성주의의 문제를 특수한 부문,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고, 해결과 관점을 내놓으라는 방식으로 인해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언어만 남고, 주체는 없어진 그간의 맥락은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처리가 더 왜곡되고, 더 관성화되는 것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덧붙여 또 하나의 특징은 '신조직보위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가해자를 보위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던 흐름과 달리 현재는 골칫덩이이던 가해자를 추방해 버리는 '손쉬운' 방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환자화, 가해자에 대한 괴물화, 성폭력 엄벌주의 등의 문화가 결합하면서 가해자는 더 이상 함께 변화해야 할 구성원이 아니라 처단하고, 추방해야 할 존재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의 '신조직보위주의'로서, 공동체주의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가해자를 빨리 빨리 처리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고민없이 수락해줘야 한다는 관성은 조직에 대한 비난을 줄이고, 조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을 좋은 방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직 자체보다 조직 구성원에 대한 관심, 치유, 성찰을 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2. 성인지적 객관성에 대해 고민하기

성인지적 객관성이 계승하고자 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의의와 현재 왜곡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의 실천과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성적자기결정권과 공동체적 토론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더 고민 할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1) 피해자 중심주의는 사건처리에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여성주의적 철학과 인식론의 문제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계속해서 입증해야 했던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사건 해결 과정과 향후 처리 방식에 대해 피해자의 의지와 판단을 중시하고, '피해자의 인식론적 특권'을 강조하고자 언명화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남성의 객관성을 역사화함으로써 부분화, 상대화하는 것이었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의미로 오도되면서 일부에서는 모든 피해 여성이 동일한 경험을 하며, 피해자의 경험이 그 자체로 객관적인 것이라고 이해되어 오기도 했습니다(정희진, 2006).

더 깊이 들어가면 피해자 중심주의는 여성주의 인식론에서 시작합니다. 기존의 객관, 과학, 합리성이라고 불려졌던 것들이 사실은 특정 집단과 성별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가장 억압받는 자의 시선이 가장 객관적이다' 라는 주장 하에 '강한 객관성(Strong objectivity)'으로 명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여성주

의 인식론을 주장한 산드라 하딩이라 도나 해러웨이 등은 맑스주의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에서 누가 더 옳은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해서 노동자 자본가의 관계를 남성과 여성으로 대치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혹은 여성, 소수자의 관점도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성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모든 지식은 불완전하나, 그렇다고 ‘anything goes’ 무것도 좋다는 식의 상대주의가 아니라, 소수자, 억압받는 자, 약자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덜’ 왜곡될 수 있으며, 그것조차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입장과 경험, 이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중심주의는 공동체에서 사회적, 국가적, 또 사적으로 약자가 될 가능성이 큰 여성/피해자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옳다’가 아니라 ‘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주의 인식론의 적용에서 중요한 마지막 단계, ‘성찰성’이 현장에 적용되기 힘들었다는 한계가 존재해왔습니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과 더불어, 피해입은 것도 억울한데 성찰까지 하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단지 사건처리원칙에서 기술적인 측면의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더 약자의 시각에서 보고자 하는 실천이자, 그러한 감수성으로 세계를 바라보겠다는 철학으로서,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피해자 중심적이지 않아도 될만큼 평등해졌는지, 아직은 의아합니다. 형식적 측면에서의 평등과 실질적 의미에서의 평등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정도 평등해졌다면, 그만큼 여성/피해자들의 감수성은 더 높아졌고, 성폭력에 대한 기준도 갈수록 넓어질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완고한 남성중심적 개인, 공동체, 국가와 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주의가 ‘여성’만을 대변하려는 개념이 아니듯이 피해자중심주의도 피해자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소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덜 왜곡될 수 있다는 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여성주의 인식론 재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중심주의라는 용어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좋을지는 더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만, 피해자의 시선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언어, 그것이 성적자기결정권과, 공동체적 토론이라기보다는 공동체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하고, 현실가능한 방안들을 타진해가면서 피해자가 타자화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문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성폭력 개념을 넓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광의/협의의 성폭력 개념 논쟁은 90년대 성폭력 법제화과정에서 발생했던 피할 수 없는 부산물이었습니다. 과도하게 성폭력 개념이 넓어지는 것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여성의 삶 속에서 피해는 연결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판단하기 어렵다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 데이트 관계에서 물리적,언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은 따로 오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의/합의/거래/보살핌의 경계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간 전까지 그토록 다정하고 사랑해주었던 남자친구가 약간의 힘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칠 때까지 조르다가 토라져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해야 하거나, 혹은 배려 있는 섹스를 나눴으나, 뒤돌아서면 다소 거친 언행으로 훈계하고 비난을 일삼는다면, 집착과 관심을, 사랑과 폭력을, 친밀함과 강간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의 언어에서 사랑, 폭력, 친밀함, 강간, 연민, 보살핌은 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피해는 사건 당시의 그 순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사적 경험이나 관계,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둘러싼 공간과 주변인들의 관계, 현재의 조건들에 따라 사후적으로 재해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이라고 문제제기하는 순간은 피해 직후가 아니라 상황과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재의미화되는 과정 중 일부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폭력 피해의 의미는 단순히 동의를 했는가, 폭력이 있었는가 등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몸의 경험과 정서적 관계 속에서 경계를 오가게 됩니다. 물론 사건마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성차별적 언어적 폭력과 성희롱, 강간을 명확히 구분해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징계의 수위를 좀 더 쉽게 결정하려거나 가해자의 억울함을 벗겨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확장된 성폭력 개념과 피해자 중심주의는 여성주의 인식론과의 연속선상에서의 피해의 의미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2) '진정한 객관성'의 허구성

발제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분법적 언어와 그에 따른 인식들입니다. 예를 들어 "진정한 객관성이란 기존 사회의 남성/가해자 중심성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의 시각을 아우르는 성평등한 관점을 말한다. 기계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시각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기울어진 권력구조를 인지하고 있어야 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기에, 성 인지적 객관성이 진정한 객관성이 될 것이다.(p.29)" 라거나 곳곳에서 피해자중심주의의 '비민주성'에 대해 비판하고, '객관성'의 긍정적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객관', '민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러한 것들은 근대적 이분법의 부산물인데, '진정한' 어떤 공평정대하고, 옳은 어떤 것, 도달해야 할 완전한 어떤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단어들은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배제하는 억압으로,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른 의미 규정없이 진정한, 민주적, 객관성 등의 언어들을 당위적으로 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되는 지향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 과거의 오류들을 더 발전적으로 수정해나가는 과정이 운동이고, 여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 인지적 객관성의 주체는 *이/미* 성 인지적이다. 이 점을 현실에 대입시켜 보면, 여전히 성매적인 상당수의 (운동) 주체들이 성 인지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주의적 운동의 필요성을 발생시킨다. 그런데 여성주의적 운동이 젠더 구조를 폭로하고 전복하여 성해방을 이뤄나가는 것이라면, 젠더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는 여성주의적 운동을 가장 사적인 일상에서부터 가장 유물론적인 계급투쟁의 현장에서까지 *당연히* 실천해야 한다. 성폭력이 어떻게 정의되든 간에 삶의 모든 방면에서, 공동체의 모든 부문에서 젠더 구조의 억압성을 폭로하고 고쳐 나가는 운동을 열정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당위는 사실 언제나 존재했다.(p.26)"는 부분도 궁금증이 남습니다. '이미', '당연히'와 같은 단어들이 어떻게 선언될 수 있을까요. 반성폭력 운동은 당위나 선언이 아니라, 아주 사적이고, 아주 일상적인 부분에서부터 공격, 거대담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문제제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당위적인 인식이 '진정'하고 '올바른' 어떤 원칙이 있다고 상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운동사회/공동체 내에 구성원들이 비운동사회 구성원들과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다를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더 크게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꼈던 여성/피해자들이 있어왔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는 더 폐쇄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이 있으며, 당위적으로 그러해야만 한다는 선언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고민이 덧붙여지기를 바랍니다.

3) 성적자기결정권의 한계

본 발제문은 "성폭력에 반대하여 어떤 권리를 획득할 것인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반성폭력운동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닌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실천된 바 있다(p.11)...성 인지적 객관성 하에서 폭력은 권리의 침해로,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규정될 수 있다(p.23)"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와 '행위'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지 궁금함과 더불어 피해자중심주의와 성적자기결정권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긍정적 의미에서 서로를 보완하기도 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은 정조를 대신하는 개념으로서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정신 이분법에 근거한 자유주의 철학에 기반한 논리이며,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자유주의적 법개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정하고 있는 '합리적' 여성 주체는 '성적으로 자율적인 여성'이지만(신상숙, 2001),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 여성 개인의 '합리적'인 성적의사결정과, 피해자는 '정숙하지 못한 여성'이라는 왜곡된 통념들이 결합되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들을 자율적인 행위자라고 보는 관점은 여성의 고통에 이름을 부여하고, 구조적 문제를 폭로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체계는 여성의 침해를 재인식하도록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도적 특권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남성 특권들은 손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Stephanie M. Wildman, 2000). 따라서 '성적인 결정'의 문제로 집중된 성폭력 담론은 여성의 구체적인 삶과 성폭력이 구성되는 맥락, 피해를 말할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는 읽어내지 못하며, 더불어 '동의'라고 하는 이분법적 기준은 오히려 일부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성적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기제로 합리화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의 권리 담론으로 치중되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이 현재 사법체계에서 보호법익으로 사용되면서 '권리'나 '결정'으로 설명될 수 없는 여성의 경험들이 성폭력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미끄러진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판했던 권리 개념으로 회귀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발제문에서는 기존의 성적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비판과 계승의 지점을 찾기 힘듭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지향해야 할 가치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생각하기에 따라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언어폭력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객관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말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Bart(1983)는 이성애적 성을 1)동의적 성(남성, 여성 똑같이 원하는 경우), 2) 이타적 성(여성은 안돼라고 말하는 데 대해 남성에게 미안하게 느끼거나 죄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경우), 3)순응적 성(안함으로써 오는 결과가 함으로써 오는 결과보다 나빠서 하는 경우), 4)강간으로 나아가는 연속선. 으로 개념화할 것을 제시합니다. Kelly(1987)는 이에 덧붙여 이타적 성, 순응적 성은 성관계를 갖도록 압력 받는 것과 비슷하고 강제적 성은 '강간 같았다'라는 반응과 비슷하다면서, 동의적 성과 강간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없고, 압력, 위협, 강제, 힘의 연속선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²⁷⁾ 이것은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과 성관계의 결을 구분하기 곤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성적자기결정권, 그리고 그것이 내포하는 동의의 문제는 오히려 저항하지 않았고,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증거삼아 일부 가해자들에게 자신의 '성적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기제로 합리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은 실제로 존재할 수 있거나,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라 임시방편적 전략이거나 하나의 담론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²⁸⁾ 문제는 동의와 거절을 넘어 '자율성'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있다는 환상을 넘어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자율성이 발휘되거나/발휘될 수 없는가, 우리 사회는 누구의 경험을 우선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더 구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공동체적 토론을 원칙으로 삼을 시의 우려점

발제자는 "그러한 당위의 상부에서 우리는 '공동체 내부의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특수한 문제상황에 직면하였고, 이 상황이 문제 해결의 원칙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았다. 따라서 성 인지적 객관성 하에서는 피해자의 견해와 구별되는 공동체 고유의 규범적 질서가 재상정된다. 그를 기반으로 공동체 구성원 각각은 스스로의 모든 민주적 잠재력과 성 인지적 반성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것을 요구받는다. 관련자들의 사적 권리들이 침해되지 않는

27) 심영희, 이화수(1989),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회, 제5권, p.135-136에서 재인용.

28)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의 말대로(2015), 진정한 의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역할, 장애여부, 성적지향, 나이 등의 조건으로 인해 이미 피해자가 불평등한 조건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을 전제로 '자율성'의 의미를 재구성할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경,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특성과 피해자 권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p.33. 한국성폭력상담소(2015),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관례뒤집기 대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재인용

한에서 최대한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진상조사가 불가능한 영역들에 대해서도 일관성이나 타당성, 정확과 같은 다른 근거를 토대로 최대한 심사숙고하여 결론을 끌어내야 하고, 그와는 별개로 문제제기된 지점과 관련된 공동체 내부의 젠더 구조에 대해 최대한 토론해야 하는 것이다(p.26)."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견해와 구별되는 공동체 고유의 규범적 질서’라는 말은 위험해 보입니다. 공동체는 피해자와 구별될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단정짓는 것이 피해자 혹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할지 우려가 됩니다. 또한 공동체는 누구이고, 무엇일까요. 공동체와 피해자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공동의 준거를 구성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공동체는 대단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또 그것이 가능하려면 공동체의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토론의 과정은 자칫 피해자나 또는 가해자에게 ‘공개적 단두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안전한’이라는 다구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민주적’ 토의를 거친다면 무엇을 토의하게 될까요. 피해의 의미? 피해에 대한 판단? 현실적으로는 사건 후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 우리 문화의 문제점,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 논쟁지점 등을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의를 통해 피해나 가해,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로서는 불안해 보입니다. 혹여 피해자의 피해 경험이 공동체의 감수성 향상을 위해 수단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생각보다 피해자/여성들이 느끼는 공포, 두려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화 과정에서부터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운동, 진보, 학생 사회라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공동체 토론’으로 성폭력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체계에서 배심원 구조와 유사한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의 감수성, 경험과 인지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번번이 기존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성폭력 사건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동체는 성폭력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치 못하게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가해자의 반성과 성찰을 도우며, 그것을 통해 공동체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소극적 ‘판단’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동체 내에 운영위원회/징계위원회 등등이 존재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신뢰받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전공자 등이 모여서 구성된 기구가 이러한 역할을 해 온 것입니다. 물론 그것 역시 불완전하고, 무엇이든 완벽한 처리과정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물론 제소인과 피제소인에게 동의를 구했다하더라도 자신의 사적 경험이 공개적으로 토론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둘 다에게 수치스럽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험을 낮설게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발제자는 “공동체적 해결의 최종적, 궁극적 목표는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보다는 공동체의 정의와 신뢰 회복이다”(p.29)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힘듭니다. 어떤 때는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해자의 성찰과 반성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공동체의 정의와 신뢰 회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피해자 치유와 회복이 최종목표라고 해도 되지 않는 마당에 그것이 최고 목표는 아니라고 한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피해를 입은 당사자보다 조직의 정의와 신뢰회복이 먼저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 여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회복과 치유보다 공동체의 정의와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직주의적, 왜곡된 공동체주의적일 수 있어 보입니다. 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주지 못하는 공동체가 어떤 의미인가 묻고 싶습니다. 공동체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롭기도 힘듭니다. 공동체는 변화해야 할 대상이지 신뢰를 회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회복할 신뢰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적 토론에 대한 그림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예상컨대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소수의 여성주의자들이 이것이 성폭력임을 토론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것은 과중해 보입니다. 사법체계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음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하던 상황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사건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책임을 함께하는 것과 주체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여전히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성폭력 문제를 토론하고 함께 의견을 맞추고 서로를 설득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맑스를 공부하는 만큼 여성주의를 공부하고 노동자 집회에 가는 것만큼 성문화 운동에 참여하고, 대부분이 여성주의자로 커밍아웃 한다고 해도 공동체는 성별, 지역, 경험, 성적 지향 등 여러 면에서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동체적 토론으로 성폭력을 논의한다면 그것의 판단을 다수결로 결정할 것인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은 완전하지 않고,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3. 사건처리 절차상에서 보완해야 할 점

1) 2차 가해의 문제

"토론을 필수적으로 하면 2차 가해로 낙인찍힐 것이 두려워 침묵하는 경향이 없어진다.(p.30)" 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2차 가해가 되는 이유는 때로는 피해자의 과잉 피해자화도 있겠지만, ‘객관’ ‘합리’ ‘이론’ 등의 이름으로 ‘맨스플레인’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공부도 안하고 그만큼의 고민과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내뱉는 말은 2차 가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누가 말하는가’는 정체성의 정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성과 이론을 가지고 의견을 밝히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면 2차 가해로의 ‘명명’은 줄어들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훈계, 비난, 비판 등은 그것의 타당함과 관련없이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토론은 발생한 실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호소인이나 해결방식에 대해 제기되는 이견과 비판이 2차 가해자를 이름으로 부당하게 억압된 바 있다."(p.21)는 언급도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과도하게 지적되는 경향이 있음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에 따르면 2차 가해로 지목되는 경우는 그 평가의 내용, 즉 이견과 비판의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조심스러운 말하기, 신뢰있는 관계,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 이런 비언어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면서 그것이 추가적인 피해인지, 귀담아 들을 이야기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성폭력,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아직까지도 언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론과 사건처리는 늘상 미끄러집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답을 내리려고 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남성중심적이고 근대적이고 운동사회의 특정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정답이 있다는 믿음, PC함에 대한 강박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공동체의 역할

피해자와 가해자, 사건관련자들 뿐 아니라 공동체 역시 성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가치에는 그동안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가치 평가’가 포함되어 있고, 성별권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동체에서 여성들의 발언력이 클 수도 있으나, 단편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인식이 성평등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동체가 지향하려는 가치가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근절인지, 공동체 유지인지에 대한 결을 찾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덧붙여 모든 문제제기를 ‘사건화’하기보다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중재와 협상도 전략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내 주체적이고 용기있는 여성주의자들을 발굴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담론을 만들어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공동체가 왜 성폭력에 전문성있는 활동가를 길러내지 못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모두가 같은 수위의 감수성과 지식을 가질 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가치를 함께 지향한다는 점에서 귀기울이고, 존중하는 자세에서 공동체의 감수성 향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인지 객관성에서 보완이 필요한 난점들’은 이미 십여년 전부터 이야기되어 오던 것입니다. 다만, 지켜지지 않았을 뿐이므로 앞으로 공동체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4. 나가며 : 반성폭력 운동을 역사화해야 한다.

이 글은 공동체적 사건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2000년 이후 운동/진보/대학/공동체 내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중심주의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문제제기하면서 성인지적 객관성과 공동체적 토론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과거의 사건을, 십여년 전의 사건의 평가와 판단을 2016년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성폭력은 유교적 보호주의와 자유주의적 성담론, 운동사회의 가부장성과 반성폭력 운동의 급진성 등이 역동적으로 결합되어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의미 투쟁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험도, 심지어 ‘피해’나 ‘가해’라 할지라도 고정된 의미가 아니며, 그것은 획득되어야 할 어떤 것으로 과정 중에 존재함으로써, 그 위치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였던 것이 다시 보면 피해가 아니라고 인식될 수도 있고, 가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성폭력 사건을 평가한다는 것은 당시의 수많은 맥락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소속 조직, 사건 관련자들의 인식, 삶의 경험, 지식의 수준 등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은 정확한 매뉴얼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건이 케이스바이케이스이며, 비슷해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늘 다르게, 새로운 맥락이 존재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지원합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딱히 본 발제문만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사건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고, 그로 인해 피해자, 가해자, 대책위 등 많은 사람들이 상처입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비밀에 붙여 은폐하지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과 ‘성폭력 사건처리’라고 하는 것에 내재하는 역동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뿐 아니라 쉽게 단정짓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운동에는 역사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본 발제문에는 시간이 ‘점핑’해서 마치 멈춰있는 듯한, 그 긴 시간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들게 합니다. 물론 2000년에 주장된 논리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처리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당시에는 성폭력을 은폐하고 조직보위가 심각했다면, (지금도 어딘가에는 그러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모든 곳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와 낙인, 추방이 강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것은 2000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왜곡된’ 방식으로 기계적, 도구적으로 관성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간의 반성폭력 운동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화’함으로써 현재의 맥락에 맞춰 재구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현재와는 어떻게 유사한지, 혹은 다른지 어떠한 구조와 조건이 변화했는지 등에 대해 낱설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글의 청자와 화자의 위치도 다시 한 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발제문에서의 반성폭력운동은 여성단체 입장에서 볼 때와 (물론 서로 상호교차하지만) 조금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단체에서 지원하는 절대 다수의 사건은 법의 공간에서, 직장과 많은 학교에서 피해자중심주의는커녕, 성폭력이 무엇인지조차 전달되지 못하고 피해자가 고통받는 곳이 많습니다. 발제문과 토론문의 내용을 한국사회 전체 여성주의운동, 반성폭력운동으로 이해하기보다 2000년대 이후 특히 운동/대학/진보/공동체(통칭해서 이하 공동체)에서 논의, 적용되었던 특수성이 있음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곳에서부터 새로운 담론과 대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지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혹시 피해자를 너무 수동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듭니다. 피해자는 누구보다 용기있고, 현명하고, 주체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와 보호와 피해자의 주체성 확보가 결을 넘나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현장, 경험, 실천 속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김혜숙, 조순경(1995), “ 「 민족민주운동과 가부장제 」 최초로 제기하는 ' 민족민주운동권 ' 의 성차별 : ' 진보적 ' 운동권의 뿌리깊은 성차별”, 『월간 사회평론 길』, Vol.95 No.8.
- 박정미(2002), “성폭력과 여성의 시민권 :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 사례분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신상숙(2001),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자기결정권'의 딜레마”, 한국여성연구소(편), 『여성과 사회』, 제 13호, 6-43쪽.
- 심영희, 이화수(1989),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회, 제5권.
- 엄혜진(2009), “운동사회 성폭력 의제화의 의의와 쟁점 : '100인위' 운동의 수용과 현재적 착종”,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제9집 1호.
- 정희진(2006), “성적자기결정권을 넘어서”, 변혜정 엮음, 『섹슈얼리티강의, 두 번째』, 서울 : 동녘.
- 한국성폭력상담소(2015),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관례뒤집기 대토론회』
- 황정미(2001), “성폭력의 정치에서 젠더 정치로”,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제49호.
- Stephanie M. Wildman(2000), “Ending male privilege: beyond the reasonable woman”, in Michigan Law Review, The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Vol. 98, No. 6, pp. 1797-1821.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길을 함께 찾아가자

전지윤(변혁재장전 준비위원)

<http://rreload.tistory.com/>

[먼저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 '피해자 중심주의의 대안을 찾는 모임 담쟁이' 동지들과의 세미나와 이번 발제문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담쟁이의 의미있는 문제의식에 자극과 도움을 얻은 내용과 일부 견해 차이 등을 반영해서 이 토론문을 썼다. 또 여기에는 그동안 토론자의 소속 모임 동지들과의 토론에서 배운 점들이 많이 반영돼 있지만 모임을 대변·대리하는 것은 아닌 개인의 생각이다.]

●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폭력은 누군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진보좌파 진영은 대체로 성폭력이 단지 몇몇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억압적 사회체제의 산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사회구조에 온전히 떠넘길 수 없는 개인의 책임을 잊지 않으면서도 말이다.

그런데 여성차별적인 이 사회와 구조 속에서 누구도, 당연히 진보좌파 진영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것은 성폭력이 주변 사람들, 나 자신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다.

누구든 피해자가,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에도 거듭 드러나 왔다. 여성주의를 지지하고 실천하던 사람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났다. '우리 단체는, 저 동지는, 나는 그럴 리가 없고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는 확신은 무너져 왔다.

많은 경우에, 그 패턴은 비슷했다. 성폭력이 일어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상처는 깊어간다. 잘못된 대처 속에서 피해자도, 지켜보는 사람들도, 가해자까지도 끝없이 더 큰 상처를 받으며, 더욱 감정의 골과 불신을 키워나가게 된다. 환멸과 냉소가 번져 나가고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씩 멀어져 간다.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에 대한 갑갑함과 의구심이 쌓여 왔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을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벌어진 운동·조직과 무관한 문제로 보는 것도, 어차피 운동적 해결은 가능하지 않으니 법적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손을 놓는 것도 옳지 않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무수한 상처와 불신 속에 진보좌파 진영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만을 낳는다.

사회의 진보와 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은 우리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럴 때 위로부터의 부조리와 억압에 맞서는 우리의 능력, 이에 대한 신뢰도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이것은 내 자신이 바로 위와 같은 일들을 겪고, 그 과정에서 커다란 잘못과 실수를 범하면서 더 깊어진 생각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고통과 상처를 겪은 피해자와 관련된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며, 자기비판적 돌아보기 속에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 현재까지의 반성폭력 운동의 원칙과 실천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우선 진보좌파 진영이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부적절하고 잘못된 대처를 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진보좌파 진영의 많은 단체들이 보인 잘못된 대응은 우리가 일반 사회나 기업 등

에서 볼 수 있는 양상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먼저 여성 억압과 반성폭력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과 토론, 내부 규약 등이 미비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단체 내부에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겪은 사람이 즉각적인 제기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피해호소는 외면, 차단, 방해받기 쉬웠다.

그래도 고통과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아서 피해 호소를 하는 경우, 이제부터 의도와 진실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의 과거와 약점 등이 들춰지면서, 2차 피해도 겪게 된다. 믿었던 동지들과 소속 단체에서 그런 일을 겪을 때 피해자는 무엇보다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가장 안좋은 것은 소속 단체가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서 법적 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다. 보통 그런 소송과 재판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사건의 본질을 몰타기하는 데 이용됐다. 피해자 가슴 속에서 상처는 더욱 깊게 패이고, 비슷한 피해를 가슴에 묻어 둔 사람들은 그걸 지켜보면서 ‘역시나’하면서 절망하게 된다.

왜 이런 양상들이 반복돼 왔을까? 여기에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먼저 진보좌파와 진영도 여성억압적 사회구조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부족함을 보이기 쉬웠다.

둘째, 대개 계급투쟁과 노동해방, 반제국주의와 민족해방 등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라는 기계적인 관점·이론과 여성주의에 대한 경직된 태도가 억압과 차별 문제를 부차적으로 보거나 둔감하게 반응하도록 작용한 측면이 있다.

셋째, 여성주의와 반성폭력을 강조해 온 단체들도 막상 자신의 조직과 지도부에 타격이 될 만한 사건이 터지면 객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이기 쉽다. 사회의 진보와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을 더욱 성장·강화시켜야 한다는 나름의 좋은 의도가 앞선 나머지, 조직 건설에 해를 끼치고 약화시킬 수 있는 일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내부적 민주주의의 부족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성폭력 사건이 구성원들 속에서 보고되거나 토론·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자유롭고 활발한 문제제기와 의사소통이 어려울수록 문제를 발견하고 오류를 교정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성폭력 운동의 문제의식과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 ‘2차 가해’ 등의 개념은 분명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먼저 성폭력을 단지 개개인들간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이자 공동체의 문제로 볼 수 있게 했다. 일상적인 반성폭력 교육과 내규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운동 내에서 더 성평등적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성폭력 피해가 제기됐을 때 외면하거나, 묵살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었다.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기존의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관점에서는 놓치기 쉬웠던 사실들을 볼 수 있게 했고, 피해자가 적대적 환경 속에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반성폭력 운동과 ‘피해자 중심주의’의 실천과 적용은 한계와 허점을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다음과 같이, 그것은 대부분 기존의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관행에 대한 정당한 반발이 지나친 일면성이나 또 다른 편향을 낳은 경우로 보인다.

* 피해호소를 무작정 의심하지 말고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자는 태도가, 피해호소만으로 성폭력을 기정사실화하는 문제를 낳곤 했다. 피해호소인을 바로 ‘피해자’로 확정하고, 가해지목인을 바로 ‘가해자’로 유죄추정하게 됐던 것이다.

* 피해자의 감정을 배려하고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제기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만 의존해 사건을 판단하는 문제를 낳기도 했다. 이것은 ‘당사자가 불쾌하고 그렇게 느꼈다면 성폭력’이라며 성폭력 개념을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었다. 피해자의 의견과 요구를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것이 성폭력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혼동도 있었다.

* '2차 가해'와 더 큰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가,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작용을 했다. 2차 가해로 규정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입을 막고 침묵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 것이다.

* 이처럼 충분한 조사와 토론이 부족하다보니 막상 사건의 객관적 진상을 밝혀서 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다. 공동체 내 합의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가해자 개인만 비난·단죄하고 도려내는 것에 치중하기도 했다.

* 결과적으로 공동체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진 경우가 생겼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치유되지 못하고, 가해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공동체 내부의 건강성과 신뢰도 회복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자 역풍이 불게 된 것도 사실이다. 반성폭력 운동의 의의와 성과를 깎아 내리고, 성차별적이고 조직 보존주의적인 대응을 정당화하는 반응이 있었다. 공동체적 해결이 아니라 개인에게 맡겨두거나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게 뭐가 문제냐는 논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 반성폭력 운동이 앞으로 견지해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

우리는 기존 반성폭력 운동의 의의와 문제의식을 먼저 공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여성이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고,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그 고통과 상처를 치유받기 매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진보좌파 진영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반성폭력 운동은 그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그러므로 반성폭력 운동과 그 운동이 이용해 온 무기인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 등을 비판하고 거부하기만 하거나, 한계와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 원칙과 개념은 분명히 '가해자 중심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피해자들에게 힘과 도움이 돼 온 게 사실이다. 그 경험에서 배우고 장점, 성과를 흡수해서 계승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 한계와 약점을 메우고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즉 더럽혀진 목욕물은 버려야 하지만 아이까지 버릴 이유는 없다. '성인지적 객관성'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제기돼야 한다고 본다. 즉 아이는 살리지만, 동시에 더러워진 목욕물은 버리려는 시도여야 한다. 나는 '성인지적 객관성'이란 개념과 용어가 새롭게 발전해 온 이런 문제의식과 내용을 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용어와 개념에 대한 해석 다툼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피해자 중심주의의 합리적 핵심을 계승하면서도 그 한계,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극복하려는 문제의식과 내용만 들어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부르느냐는 부차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반성폭력 운동이 앞으로 견지해야 할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 성폭력 예방 교육과 내부 규약 마련이 필요하다.

여성 억압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과 토론을 유지하고 성인지적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공동체의 노력은 중요하다. 지적돼 왔듯이 여기서는 '피해자가 되지 않을 교육'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 않을 교육'만 가능하

다. 그런 환경에서 성차별적 언행과 성폭력은 좀 더 억제될 수 있고, 성폭력 피해 호소와 시정 요구는 더 신속하고 부담없이 제기될 수 있다. 실질적인 예방교육과 내부규약의 도움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은 더 효과적으로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와 파장도 최소화해야 한다.

*** 성폭력 피해자가 공개 폭로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공동체 내부적 예방책과 제도, 절차가 미비할 때 끓던 문제가 공개 폭로로 나타나기 쉽다. 그럴 때 온라인 등에서 문제가 더욱 악화·변질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그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 중요하다. 공개 폭로가 벌어지면, 막다른 길에서 벼랑 끝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피해호소인을 탓하고 책임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 등으로 번지며 뒤틀리지 않게, 공동체 내부적 절차와 제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성폭력 피해호소에 대한 성인지적 대응이 필요하다.**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에 그것을 폭로하는 여성은 극소수이고, 거기에는 큰 용기와 각오가 필요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먼저 피해야 할 것은 ‘거짓말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덮어놓고 의심·불신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의심·불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호소인의 과거 행실과 ‘피해자답지 않은 태도’를 들춰내고 공격하기 쉽다. 필요하고 합리적인 반응은 공감과 위로의 자세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피해호소인이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구하는 것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은 ‘고통의 상대 평가’다. 더 심각한 피해가 많고, 더 중요한 쟁점들이 많다는 비교는 피해 호소를 가로막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 사건에 대한 성급한 규정을 피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곧, 피해호소를 곧바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덮어놓고 불신, 또는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찾아나가는 게 필요한 일이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도 온전한 진실을 밝혀내고, 그에 바탕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에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동체는 담당 기구나 대책위 등을 구성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밝혀내야 한다. 피해호소인을 ‘피해자’로, 가해지목인을 ‘가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그 다음이어야 한다.

***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규제해야 한다.**

피해호소인의 과거와 사생활, 이성관계, 개인적 약점 등을 들춰내기, 피해 호소 과정의 실수와 오류 더 부각하기, 정과 갈등으로 몰아가기 등은 모두 2차 피해를 낳는다. 성차별적 편견에 의한 것이든, 실수·무지에 의한 것이든, 정과적 이익을 위한 것이든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낳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악화시키기 마련이다. 공동체는 이것을 분명히 예방·규제해야 한다. 다만 건전한 토론과 문제제기까지 가로막으며 구성원들의 무관심과 침묵을 강제하진 말아야 한다. 가해자 선별의 의미가 강한 ‘2차 가해’보다, 피해자 보호의 의미를 담은 ‘2차 피해’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다.

*** 가해지목인을 악마화하거나 방어권을 박탈하지 말아야 한다.**

가해지목인에 대한 선부른 단죄와 공동체에서 격리를 우선하거나, 온라인 등에서 인신비방이 번져가는 것을 방조하거나, 사적 보복과 폭력을 방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가해지목인과 주변 사람들의 거센 반발을 낳으며 문제 해결을 방해하거나, 성폭력 사건의 가해지목인을 ‘지나친 여론재판의 피해자’로 만드는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두고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권리를 포함한 가해지목인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악용해 피해호소인에게 ‘2차 피해’를 주거나, 입막음과 몰타기를 위한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것은 가해지목인의 방어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

*** 성인지적 접근과 객관적 진상 규명을 대립시키지 말아야 한다.**

성폭력 사건은 여성차별적 사회 속에서 벌어진다. 여기서 공평무사한 중립적 접근은 불평등한 현실을 정당화하기 쉽다. 이런 불평등과 차별은, 그것 때문에 고통 받아 온 사람들에게 더 많이 더 잘 보일 것이다. ‘서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진보좌파는 항상 착취·억압 당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차별적인 구조를 감안하며 어떤 행동이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해야 한다. 피해호소인이 처한 구체적 조건과 맥락 속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런 성인지적 관점에서 객관적 물증, 정황 증거, 피해호소인과 가해지목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객관적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 처벌에 머물지 말고, 교훈을 배우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상이 드러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해 진다. 그러나 가해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며,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해자만 괴물 취급하며 도려내는 것은 걸으면 단호해 보이지만,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고 공동체적 해결과 거리가 멀다.

성폭력 사건은 공동체 내에서 보고와 토론의 대상이 돼야 한다. 어떤 사회구조와 공동체 내부 문화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지, 가해자는 어떤 잘못을 했는지, 피해자는 무엇 때문에 고통받았는지 성찰해야 한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교훈을 배우고, 그에 따라 재발방지책이 마련·갱신돼야 한다.

물론, 보고와 토론은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하는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상처와 사건의 변질을 낳을 수 있다.

●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은 쉽지 않다. 피해호소가 목살당한 후 피해자는 큰 상처를 안은 채 공동체를 떠나고 남은 사람들 속에는 불신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를 과감하게 도려냈지만, 피해자의 상처는 별로 아물지 않았고 공동체가 무엇을 배웠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서, 공동체 내에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피해자는 상처를 이겨내고 운동과 동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도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진정성있는 실천 속에서 다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는 성적 억압과 차별을 더 깊이 이해하고, 비슷한 사건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사회 진보와 변혁을 위한 운동에 대한 냉소가 아니라 지지를 갖게 될 것이다. 부디 이번 토론이 진보좌파 진영이 함께 이런 문제를 돌아보고 더 건강하게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